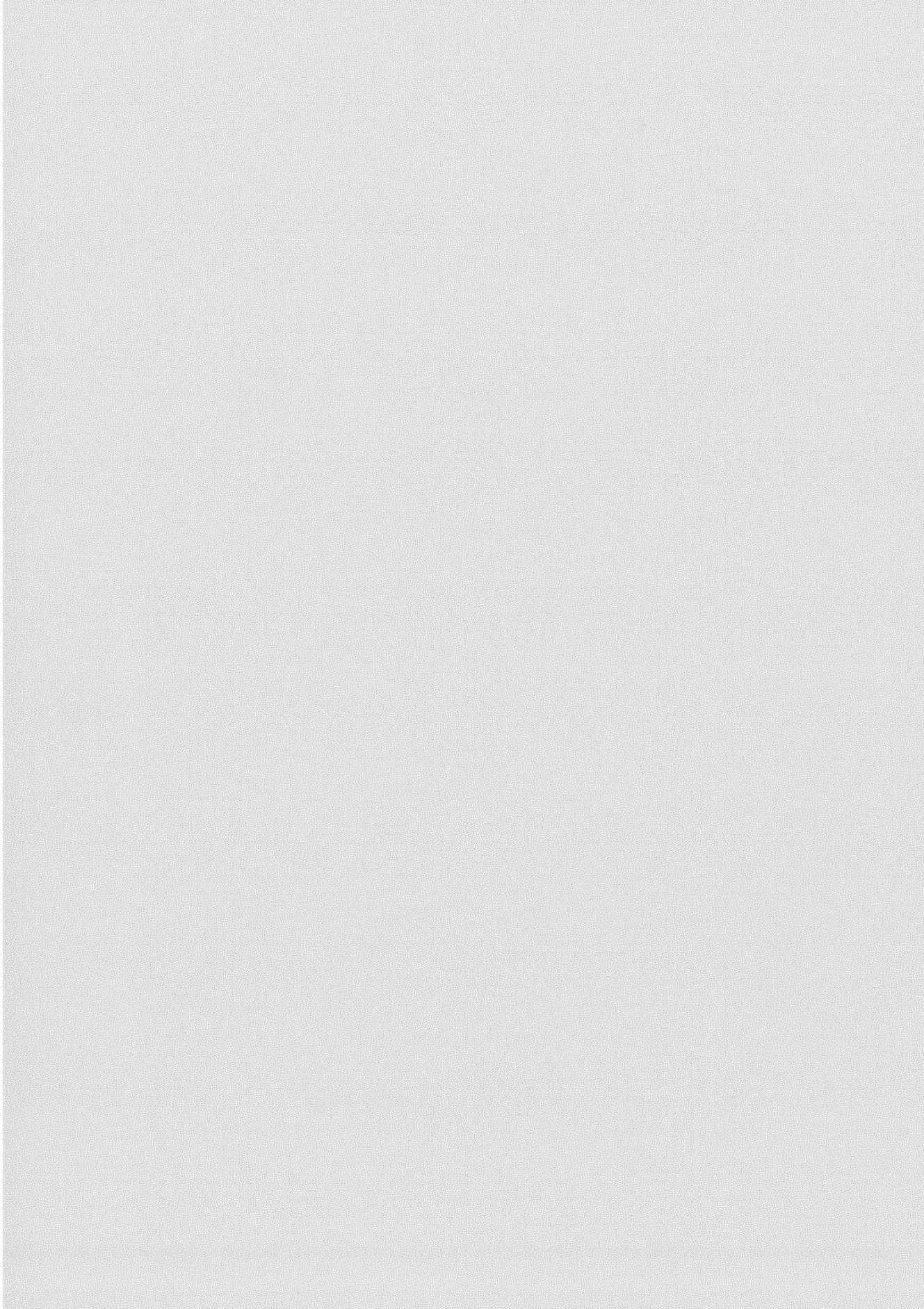


第11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0.3.27 ~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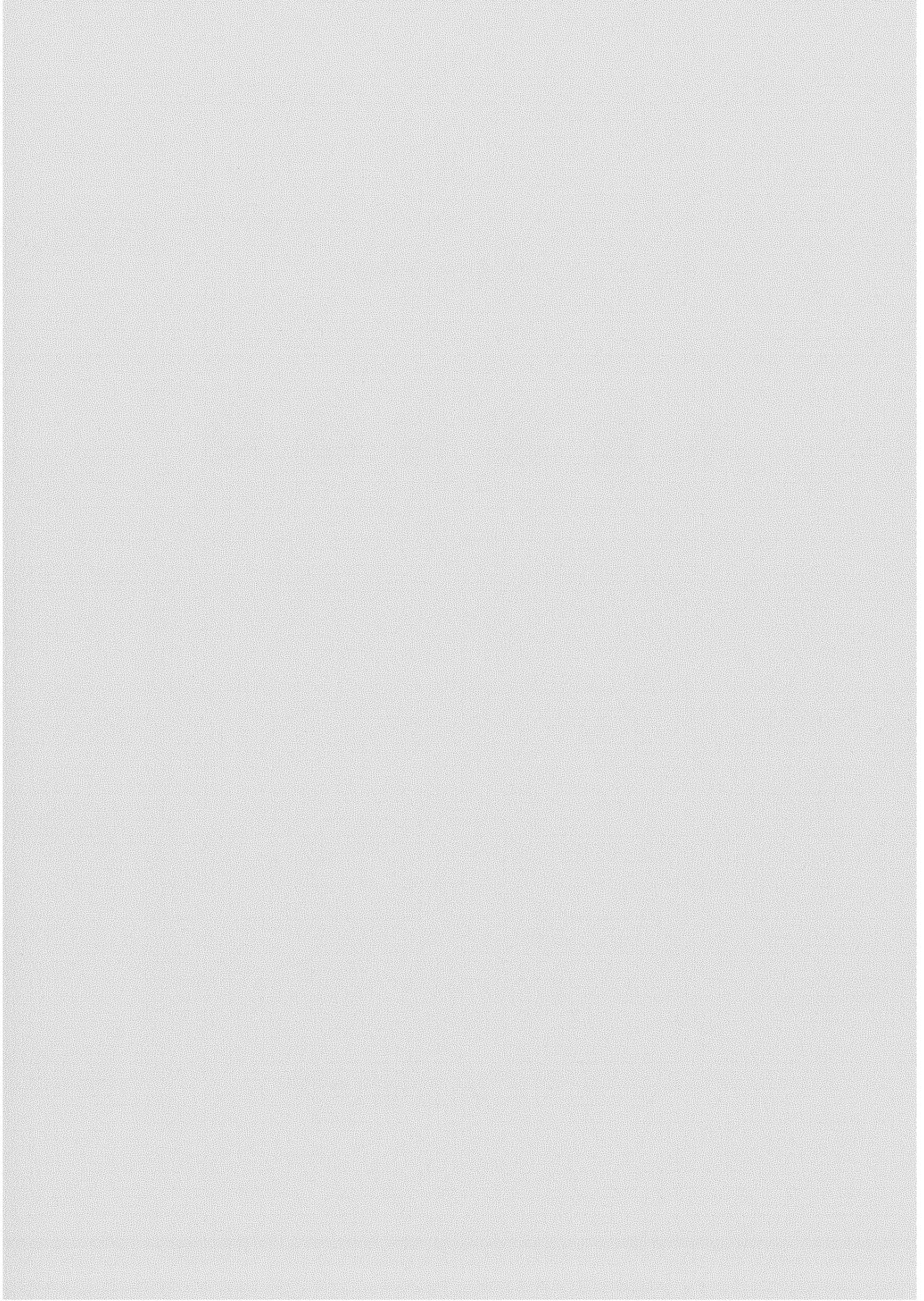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1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2000 · 3 · 통권 제68호

I. 개회식	3
II.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III.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5
IV. 부 록	
1. 의사일정	23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5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1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5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7
6. 2001학년도 초·중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	55

7. 학교설립계획안	61
8.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변경계획안	69
9.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변경계획안 설명자료	77
10.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1
11.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3
12.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03

V. 별책부록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3월 27일(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1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유근영)

(11시 00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 의사담당 유근영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최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3월 27일(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학년도 초·중통합운영학교설치조례안
7. 학교설립계획안
8.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9.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1.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附議된 案件

1. 간부소개(부교육감 유선규)
2. 경과보고(의사과장 박영하)
3.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2001학년도 초·중통합운영학교설치조례안(교육감 제출)
9. 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10.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11.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2.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3.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다.

● 의장 조일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위원님께서 그간 해외연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를 하고 나서 50여일 만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달 중순에 12박 13일에 걸쳐서 우리 교육위원들의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먼 거리를 힘든 일정으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육위원연수에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교육감님과 집행청 간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신 집행청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1. 간부소개

(11시 04분)

●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감님께서 특별휴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으로 신유철 청주수곡초등학교장이 전직되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인사하고 들어감)

교육정보화과장으로 채수병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이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인사하고 들어감)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경과보고

(11시 05분)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의사과장 박영하

의사과장 박영하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3월 1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고 제2000-3호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바 있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2월 19일에 열린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3월 10일 충청북도 조례 제2558호로 공포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일곱 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11시 08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의한 후, 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학년도 초·중통합학교설치 계획안 등 3건의 일반 안건과 함께 본 회기 마지막날인 3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3일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서면으로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 참 조 의사일정안: 별첨1

(끝에 실음)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
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7.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학년도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
치계획안

10. 학교설립계획안

11.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12.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1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1학년도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학교설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여덟 개 안건을 동일국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집행청의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일환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 외 일곱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는 생리기 뿐만 아니라 임신 검진까지 확대하였고, 생후 1년 미만 유

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한시간의 육
아시간을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20
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간의 휴가를 1회에 한하여 허가하던 것을
재직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셋째, 퇴직 준비 휴가의 허가 범위를 정년
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서 조기 퇴직 공
무원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넷째,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산입은 30일 이상의 휴가
에서 경조사 휴가의 경우도 포함하여 확대
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조사별 휴가의 대상을 확대하
였으며, 그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
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
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사유는 교육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지난 3월 2일 개정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조정되고,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법 조
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수가 5명이 감축되어 총

정원 2,828명을 2,82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
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3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인사
규정의 개정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요건이 조정되어 관련사
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상계획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은 행정
자치부 예규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
준에 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고, 근무상
한 연령은 5급 상당의 경우 별정직공무원인
사규정 제6조에 의거 5년 임기제에서 55세
정년을 적용하도록 이를 정비하였으며, 둘
째,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한 강제사항을 무
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군입대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대한 조항을 다른 직종과 형
평성에 맞게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소속지

방벌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별첨4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
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0년 2월 28일자로 초·중
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수 60
명 미만의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위원 정
수에 관한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둘째, 병설 및 통합학교 운영위
원회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학
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상위 법령에서 삭
제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 참 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5

(끝에 실음)

다음은 2001학년도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
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인적 물적자원의 통합 활용으로 소규모학교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법인 해산시
설립자에게 재산을 환원해 주는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한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학교법인 신덕학
원에서 법인 해산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존폐 문제가 거론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대다수의 지
역주민이 신덕중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여
덕산초와 통합운영학교를 설치해 달라는 요
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초등학교 7학급,
중학교 3학급 규모로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2억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덕산초등학교 부지에 교실을 증축
하여 학생을 수용할 것이며, 교실증축이 완
료될 때까지는 현 신덕중학교의 시설을 활
용하여 2001년 3월 1일 개교에 차질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 참 조 2001학년도 초·중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 별첨6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택지개발지구내 주택 건축에
따른 유입 학생을 수용하고 일반계고등학교
의 수용능력을 확충하며, 청주지역 과대학
급을 해소하여 학교간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상당구
용암 2단지 택지개발지구내에 36학급 규모

로 가칭 명암초등학교를 2002년 9월 1일자로 개교하고, 흥덕구 하북대 택지개발지구 2457번지에 가칭 북대고등학교를 남녀공학 보통과 27학급 규모로 2003년 3월 1일자로 개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초등학교 120억 2,480만 5천 원, 고등학교 178억 7,361만 3천원으로 총 298억 9,841만 8천원이 소요되어 교육부 교부금 및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며,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및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 및 초등학교 설계용역비 124억 1,031만 9천원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시설비는 200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참 조 학교설립계획안: 별첨7
(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에 개교 예정인 가칭 청주 명암초등학교의 학교부지 1만 2,509㎡와 2003년도에 개교예정인 가칭 북대고등학교의 학교부지 1만 5,690㎡를 매입하고자 하며, 7차 교육과정의 시행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주고 외 7개교에 교실 및 부속시설 등 8,616㎡, 충북고 외 3개교에 공작물 6종,

초·중학교 통합운영을 위한 제천 덕산초등학교에 교실 및 부속시설 1,311㎡, 괴산 연풍초등학교의 다목적실 및 시청각실 916㎡를 증·개축하는 등 총 학교부지 2만 8,199㎡, 건물 1만 843㎡, 공작물 6종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별첨8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설명자료: 별첨9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금수입, 전년도이월금 등 증액된 세입을 재원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대비한 교육시설 확보,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 투자,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교단선진화 및 교직원 사기진작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초 예산 7,527억 4,336만 3천원 대비 7.8%인 587억 9,778만 3천원이 증액된 8,115억 4,11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금 수입인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28억 9,159만 4천원, 도세전입금이 2,462만 3천원 증액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37억 6,968만 3천원, '99년도 순세계잉여금 520억 9,78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에 세입재원의 76%인 450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경비로 74억 567만원, 교육행정부로 22억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제7차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교실 및 특별교실 73.5실, 화장실 17실, 부대시설비 등에 71억 6,969만원과 교육환경개선을위한 교실중·개축 등에 162억 2,990만원과 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에 70억 4,400만원, 2002학년도 개교예정인 가칭 청주 명암초등학교와 2003학년도 개교예정인 가칭 복대고등학교의 토지매입비 121억 8,124만 4천원과 명암초등학교 설계용역비 2억 2,9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한 학교전산망 사업비로 4억 9,690만원을 계상하여 2002학년도까지 통·폐합 대상 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전산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과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중학교 다목적 칠판 구입비 7억 5,262만원과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CAD실습실 확충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사습관을 형성하고자 중학교 급식시설비로 6억 2,0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와 학교체육 활성화를 기하고 전국 소년체전 대비 훈련비와 장비구입 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발령에 따

른 공무원 이전비 5,600만원과 학교현장의 교직원 화장실이 부족하여 불편하였던 사항을 해소하고자 직원 화장실 확충에 21억 4,562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고자 12개 중학교 교무실에 OA시스템 설치비로 4억 5,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 참 조 2000년도 충청북도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첨10
(끝에 실음)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1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책2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추가 교부액과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비,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등에 중점을 두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을 위한 시설확보에 역점을 두었음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거의 10여개에 이르는 안건들을 긴 시간 동안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1.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6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는 각각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분 위원님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저를 제외한 여섯 분 위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도 저를 제외한 여섯 분 위원님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 중 4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또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로 즉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금회의 회의록 서명위원은 송진하, 이기수 두 분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서부터는 29일까지는 소위원회 활동이 계속되겠으며, 3월 30일 하루는 의안관련 현장을 방문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집행청의 각별하신 협조도 부탁을 올립니다.

본 회기 마지막날인 3월 31일의 제2차 본회의도 역시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9분 산회)

[제111회-제1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1명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성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 별첨1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별첨2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별첨3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별첨4
-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별첨5
- ▶ 2001학년도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 별첨6
- ▶ 학교설립계획안: 별첨7
- ▶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별첨8
- ▶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사항별설명서: 별첨9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첨10

※ 별 책 부 록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책1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별책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3월 31일(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학년도 초·중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
6. 학교설립계획안
7.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8.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2001학년도 초·중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교육감 제출)
6. 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7.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8.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대리 이기수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장님이 사정이 있어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8개 안건중 4건의 개정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기타 안건과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 의장대리 이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

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상정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재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손만재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손만재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4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7일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부터 심사에 들어가 3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4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남녀평등 이념에 부합한 경조사 특별 휴가의 실시, 퇴직준비 휴가대상 공무원의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기존의 조례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 개정 에 따라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명 감축하고 근거조항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 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개정 에 따라 비상대비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 상한연령 및 임용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에 따라 학생수 60명 미만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 정수에 관한 규정의 삭제,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정수 산정기준 마련,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 삭제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11

(끝에 실음)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 속에도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대리 이기수

손만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 및 답변은 알뜰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 관계관계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상정 안건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먼저,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학년도 초·중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

(11시 12분)

● 의장대리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학년도 초·중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학년도 초·중통합 운영학교 설치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학교설립계획안

(11시 13분)

● 의장대리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학교설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11시 14분)

● 의장대리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5분)

● 의장대리 이기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장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입니
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2000년도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
산안은 지난 3월 1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
되어 3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부된 날
로부터 3일간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
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
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 일동은 본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세출예
산 편성의 합목적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527억 4,336만원보다 587억 9,778만원이
증액된 8,115억 4,0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
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28
억 9,159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
담수입 2,462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

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558억 8,156만원으
로 편성되었는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이 95.1%로 재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514억 815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2억 1,923만원, 급여,
복지에 39억 4,032만원을, 그리고 교육행정
에 32억 2,604만원, 기타 경비로 40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재원의 대부분을 학교교육에
투자하여 87.4%를 점유하고 있고, 교육행정
에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나뉘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어서 본 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4억 2,450만원으로 공고 및
상고 18개교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 능력향
상을 위한 캐쉬서버 확충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고 7개교를 제외한 공고 11
개교 6,050만원은 보다 시급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동 재원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어 감액하였으며, 고등학교 14개교에 쓰
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하여 불 때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
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지원금과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교육정보

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대비 교육시설 확보와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확보, 교원 사기진작 방안 모색을 기본방향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히 편성되었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각급학교에 어학관련 실습기자재의 확충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소수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국고지원사업 중에는 도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해 볼 때 그 사업추진의 성과가 미미하고 학교간 균형 발전에도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중앙에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의견에 따라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삭감이유와 내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별첨12

(끝에 실음)

끝으로 그 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대리 이기수

김광수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안에 대하여는 집행청 관계관계서, 수정안에 대하여는 김광수위원장님께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과 교육감 제출 원안에 대하여 각각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5명)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찬성을 하였으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인을 포함하여 6명,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

[제111회-제2차 본회의]

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 각각 8,115억 4,114만 6천원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계획된 안건들은 바로 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해당 안건들이 4월 18일부터 열리는 차기 도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을 다녀오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폐회)

0 출석위원 : 6명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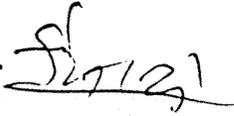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공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 정호선,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11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첨12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4. .

의 장 조 일 환 

위 원 송 진 하 

위 원 이 기 수 

의사국장 신 춘 우 

(별첨1)

議 事 日 程

第11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0.3.27. ~ 3.31. (5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2000.3.27.(月) 10:30 11:00	<input type="checkbox"/> 教育委員 協議會 : 教育委員室 <input type="checkbox"/> 開會式 [第1次 本會議 開議] 1. 第11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會期 : 2000. 3. 27. ~ 3. 31. (5日間) 2. 忠清北道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提案說明) 3. 忠清北道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提案說明) 4. 忠清北道教育委員會吳教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等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提案說明) 5. 忠清北道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說明) 6. 2001學年度 初·中統合運營學校 設置計劃案(提案說明) 7. 學校設立計劃案(提案說明) 8. 2000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第1回 變更計劃案(提案說明) 9. 2000年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 第1回 追加更正 豫算案(提案說明) 10. 條例審查小委員會 構成의 件 11. 豫算·決算小委員會 構成의 件 [第1次 本會議 散會]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 條例審查小委員會 - 豫算·決算小委員會	
3.28.(火) f 3.29.(水)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 條例審查小委員會 - 豫算·決算小委員會	本會議 休會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3. 30.(木)	<input type="checkbox"/> 議案관련 現場 訪問 : -2001學年度 初·中統合運營 對象學校 등	本會議 休會
3. 31.(金) 11:00	<p>[第2次 本會議 開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忠清北道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2. 忠清北道教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忠清北道教育委員會吳教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等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忠清北道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2001學年度 初·中統合運營學校 設置計劃案 6. 學校設立計劃案 7. 2000年度 公有財產管理計劃 第1回 變更計劃案 8. 2000年度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 第1回 追加更正 豫算案 <p>[第2次 本會議 散會]</p> <p>※ 閉 會</p>	

(별첨2)

의안번호	제 111-1호
의결 년월일	2000. 3. .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3. 18.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2000. 3. 18.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이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점을 개선·보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안 제22조제2항)
-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안 제22조제3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안 제22조제4항)
-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 로 기간 확대 (안 제22조제7항)
- 퇴직준비휴가의 범위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공무원”으로 확대 (안 제22조제8항)
-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였으나,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포함 함. (안 제23조)
- 경조사별 휴가대상 확대 (별표 2)

개정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6610호, '99.12.7)

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의 제목중 “ 연가일수에서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한다.

제21조제6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생리기마다 1일”을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하고, 동조 제8항(종전의 제7항)중 “명예퇴직”을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으로 한다.

제2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별 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9조(연가일수에서의 산입) ①~③(생략)	제19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③(현행과 같음)
제21조(공가) (생략)	제21조(공가)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u>	6.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u>
제22조(특별휴가) ① (생략)	제22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u>	② <u>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u>
③ <u>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u> (신설)	③ <u>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접근을 위하여 매월 1일</u>
④ ~ ⑤	④ <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u>
⑥ <u>교육감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u>	⑤ ~ ⑥ (현행 ④ ~ ⑤호와 같음)
⑦ <u>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u>	⑦ <u>재직기간 중에</u>
⑧ (생략)	⑧ <u>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u>
제23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u>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23조(휴가기간중의 휴가일수) <u>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별첨3)

의안번호	제 111-2호
의결 년월일	2000. 3. .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2000. 3. 18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2
----------	---------

제출년월일 : 2000. 3. 1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사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내용중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조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8명에서 5명운 감축하여 2,823명으로 함.
(안 제2조)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법률 제6216호, '00.1.28 개정)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제762호, '00.3.2 개정)

개정 조례안 : 불임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 : 불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2조중 “2,828명”을 “2,823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2,815명”을 “2,810명”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징환동비동의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3호중 “법 제43조”를 “법 제36조”로 하고, 동조 제4호중 “법 제41조”를 “법 제34조”로 한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2조”를 “법 제17조”로 한다.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로 하고,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3조중 “법 제41조”를 “법 제34조”로 한다.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별지1호서식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5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법 제43조”를 “법 제36조”로 한다.

제5조중 “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5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법 제43호”를 “법 제36조”로 한다.

관 계 범 령

● 법률 제6216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제17조(의사국의 설치등) ①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전에서 “의사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용한다.

제19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2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제20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33조(보조기관) ①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공무원의 배치) ①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34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34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청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첨4)

의안번호	제 111-3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3. .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2000. 3. 18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3
----------	---------

제출년월일 : 2000. 3. 1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사유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이 조정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근무상한연령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8조제1항)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담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던 조항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직권면직 조항 강화(안 제10조제1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11조)
- 군입대에 의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안 제11조의2)
- 휴직의 효력조항 신설(안 제11조의3)
 - 휴직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군입대 휴직 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

관련법규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총무처 예규 제326호)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 제15956호)
-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교육부 학총 12100-784)

조 례 안 : 별첨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 별첨
-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 별첨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은 국가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일반직 상당 계급별 연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휴가기간이 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5급상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임용자격) ①~②(생략)</p> <p>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단서 신설)</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p> <p>(단서 신설)</p> <p>②(생략)</p>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3.(생략)</p>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2.(생략)</p> <p><신 설></p>	<p>제4조(임용자격) ①~②(현행과 같음)</p> <p>③.....</p> <p>.....</p> <p>.....</p> <p>다만,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p> <p>.....</p> <p>.....</p> <p>다만,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은 국가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일반직 상당 계급별 연령으로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10조(직권면직)</p> <p>.....</p> <p>.....</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3.(현행과 같음)</p>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2.(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p>

관 계 법 령

□ 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총무처 예규 제326호, '97.12.29)

2.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가. 적용대상

이 예규는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1급 내지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이하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나. 임용자격

- 1) 임용제청권자는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군에서 전역한지 1년미만인 전투병과 출신장교를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자질이 탁월하거나 기타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역한 후 1년이 경과후 전투병과 출신장교와 기타병과 출신장교 및 비상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도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할 수 있다.
- 2) 군 경력자의 비상업무담당공무원 임용시 임용예정상당계급별 군경력기준은 “공무원 임용및시험시행규칙”(총리령) 별표5 “특별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준용한다.

다. 근속년수

4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은 당해 상당계급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제청권자는 근속년수 연장의 필요성, 인사기록카드 사본,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의 근속년수 연장 심의결과통보서(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근속년수 5년에 도달하기 1월 이전에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 제15956호, '98.12.31)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 같다.

[별표]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 연령표

직무분야 \ 구분	일반직상당계급	근무상한연령
비 상 계 획	5급상당이하	55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교육부 학총 12100-784('98. 9. 22)]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광역시(특별시·도·시·군·자치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5)

의안번호	제 111 호
의결 년월일	2000. (제 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7. 18.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4
----------	---------

제출일자 : 2000. 3. 1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사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도 조례중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병설 및 통합 학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안 제2조제1항,제4항)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법 및 시행령 조항 수정
(안 제9조제1항및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제심의 요구권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항 삭제(안 제21조제3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부칙안 제2항,제3항)

개정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2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조 례 안 : 덧붙임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的人数은 통합 또는 병설학교의 전체학생수를 기준으로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9조제1항중 “법 제32조제10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법 제32조제1호내지 제9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호내지 제11호”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법 제32조제9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 <u>영 제58제4항에서 규정한 학생수가 60명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범위에서 당해학교의 규정으로 정하고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②~③(생략)</p> <p>④ <u>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u></p>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 <u>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통합 또는 병설 학교의 전체학생수를 기준으로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삭제)</p>
<p>제9조(심의사항) ① <u>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5.(생략)</p> <p>② <u>법 제32조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u></p>	<p>제9조(심의사항) ① <u>법 제32조제1항 제12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u></p> <p>.</p> <p>1.~5.(현행과 같음)</p> <p>② <u>법 제32조제1항제11호</u></p> <p>.</p> <p>.</p>
<p>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②(생략)</p> <p>③ <u>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제심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삭 제)</p>

관계법령발췌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 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 이내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 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인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0조(운영위원회의 심의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영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첨6)

의안번호	제 111 - 5 호
의결 년월일	2000. 3. . (재 회)

2001학년도 초·중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3. 18.

2001학년도 초·중통합운영학교 설치계획(안)

의안 번호	111-5
----------	-------

제출년월일 : 2000. 3. 18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설치목적

-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 제고
- 인적·물적자원의 통합 활용으로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

□ 기본방향 및 근거

- 현행 학제 유지(6·3·3·4)
- 통합운영 대상학교를 각각 설치함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 설치계획

- 개교예정일 : 2001년 3월 1일
- 대상학교 : 제천 덕산초등학교 + 신덕중학교

학교명	설립년월일	2000		2001		2000 교직원수	교지 (㎡)	수용 시설	비고
		학급	학생	학급	학생				
덕산초	21. 9. 3	7	163	7	169	19	15,305	16	1972 개축
신덕중	67. 2. 9	3	113	3	97	14	57,620	17.5	1986 개축

- 통합운영학교 명칭(가칭) : 덕산초등학교, 신덕중학교

○ 설치 추진일정

- 학교부지매입 : 해당 없음
- 시설공사 : 2000. 5 ~ 2001. 3 (설계용역 기간 포함)
- 설치예정일 : 2001. 3. 1 명칭 및 위치 변경후 초·중통합운영

□ 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 통합운영에 따른 부족시설 확충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2억 4천 6백만원
- 시설규모 : 10학급(초 7학급, 중 3학급)
- 시설계획 : 덕산초 후관에 증축

(금액단위 : 백만원)

일반교실		급식소		화장실		창고		숙직실		교실난방		건축철거비		승압	시설	계
신수	금액	신수	금액	신수	금액	신수	금액	신수	금액	신수	금액	신수	금액	시설	부대비	
10 (2)	644	1.5	120	2	163	1	17	1	29	26	129	2	4	82	58	1,246

※ ()는 계단실로 본수에 미포함

○ 통합운영학교 교실현황

학교명	보통교실	특별교실	특수 활동실	관리실	보 위 생 실	유치원	계단실	급식소	계
덕산초	10	6	3	3	0.5	2	(6.5)	(3.5)	24.5

□ 교원배치

-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겸임 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운영학교에 교장, 교감 각 1인 배치
- 교사는 소지자격증에 따라 통합운영학교에 수업을 겸임

□ 교육과정 운영 등

- 예·체능교과 및 특별활동의 경우 학교급별 구분없이 통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무관리 및 회계관리를 일원화하여 일괄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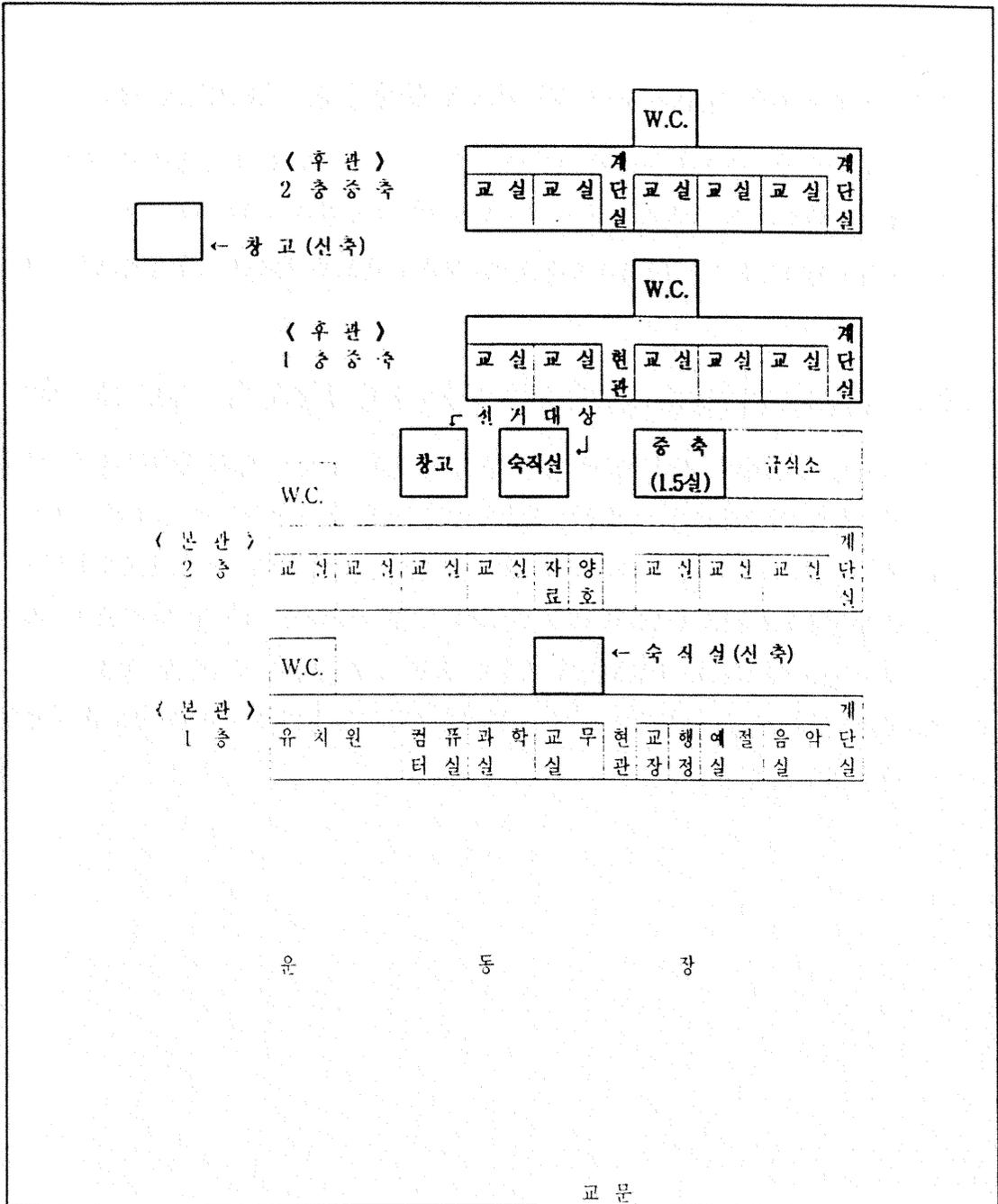
□ 학생수용계획

- 통학구역조정 : 해 당 없 음
- 학급편성 : 통합운영학교의 교원배치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 별도로 학급편성 지표 적용
- 수업대책 : 통합운영학교(현, 덕산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완공시까지 현 학교 (신덕중학교)에서 수업

□ 참고사항

- “가칭” 덕산초등학교, 신덕중학교 통합운영학교 건물배치도 1부.
- 근거법령
 - 근거법령 반체서 별도

덕산초등학교 시설배치도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 '97.12.13. 제정

-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
- 시설·설비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6조(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 '98. 2.24. 제정

-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 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함.
- 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통합운영학교에는 통합운영 되는 학교에 각각 적용되는 교직원 배치기준에 의한 교직원을 배치하되,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교직원을 겸임.
- 교육과정의 운영, 사무관리 기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별첨7)

의안번호	제 111-6 호
의 결 년 월 일	2000. 3. . (제 회)

학 교 설 립 계 획 (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3. 18.

학교설립계획(안)

의안 번호	111-6
----------	-------

제출년월일 : 2000. 3. 10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초등학교

설립목적

-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축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

설립계획

- 신설학교 현황

학교급별	교육청	학교명 (가칭)	위 치	규모	개교예정 년월일
초	청주	명암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2) 택지개발지구내	36학급	2002. 9. 1.

- 학생수용계획

학교명 (가칭)	수용계획			소요교실수				비 고
	학급수	학생수	금당평균	교과실	관리실	기타	계	
명암초	36	1,120	31.1	41	6.1	16.7	63.8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학교급별	교육청	학교명 (가칭)	부 지		시설비 예정액	계
			면적(m ²)	금 액		
초	청주	명암초	12,509	3,907,044	8,117,761	12,024,805

소요제원 확보계획 : 교부금 및 자체재원으로 충당

- 설계용역비 및 부지매입비 : 2000.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 시 설 비 : 2001. 본예산에 반영

2. 고등학교

설립목적

- 일반계고등학교 수용능력 확충
- 청주지역 고등학교의 과대학급 해소
- 택지개발로 증가하는 홍덕구 중학교 졸업생 수용

설립계획

- 신설학교 현황

학교급별	학 교 명 (가 칭)	위 치	규모	학과명	개교예정 년 월 일
고	복대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복대동 2457번지	27학급	보통과	2003. 3. 1.

- 학생수용계획

학교명 (가칭)	수용계획		소 요 교 실 수				비 고
	학년당 학급수	완 성 학급수	교과실	관리실	기 타	계	
복대고	9	27	55.5	7.5	22	85	남여공학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학교급별	학교명 (가칭)	부 지		시설비 예정액	계
		면적(m ²)	금 액		
고	복대고	15,690.3	8,274,200	9,599,41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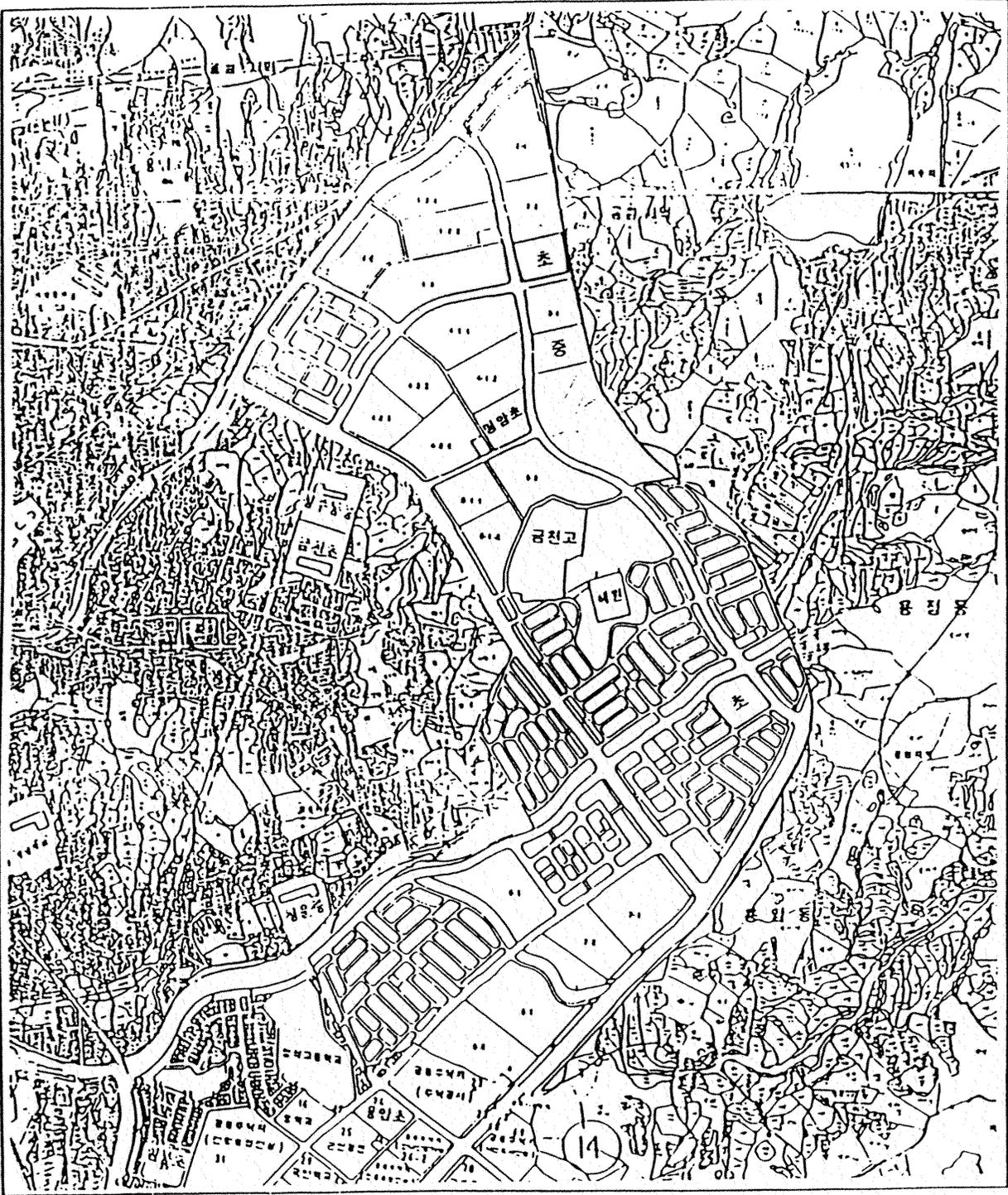
소요제원 확보계획 : 교부금 및 자체제원으로 충당

- 부지매입비 : 2000.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 시 설 비 : 2001. 본예산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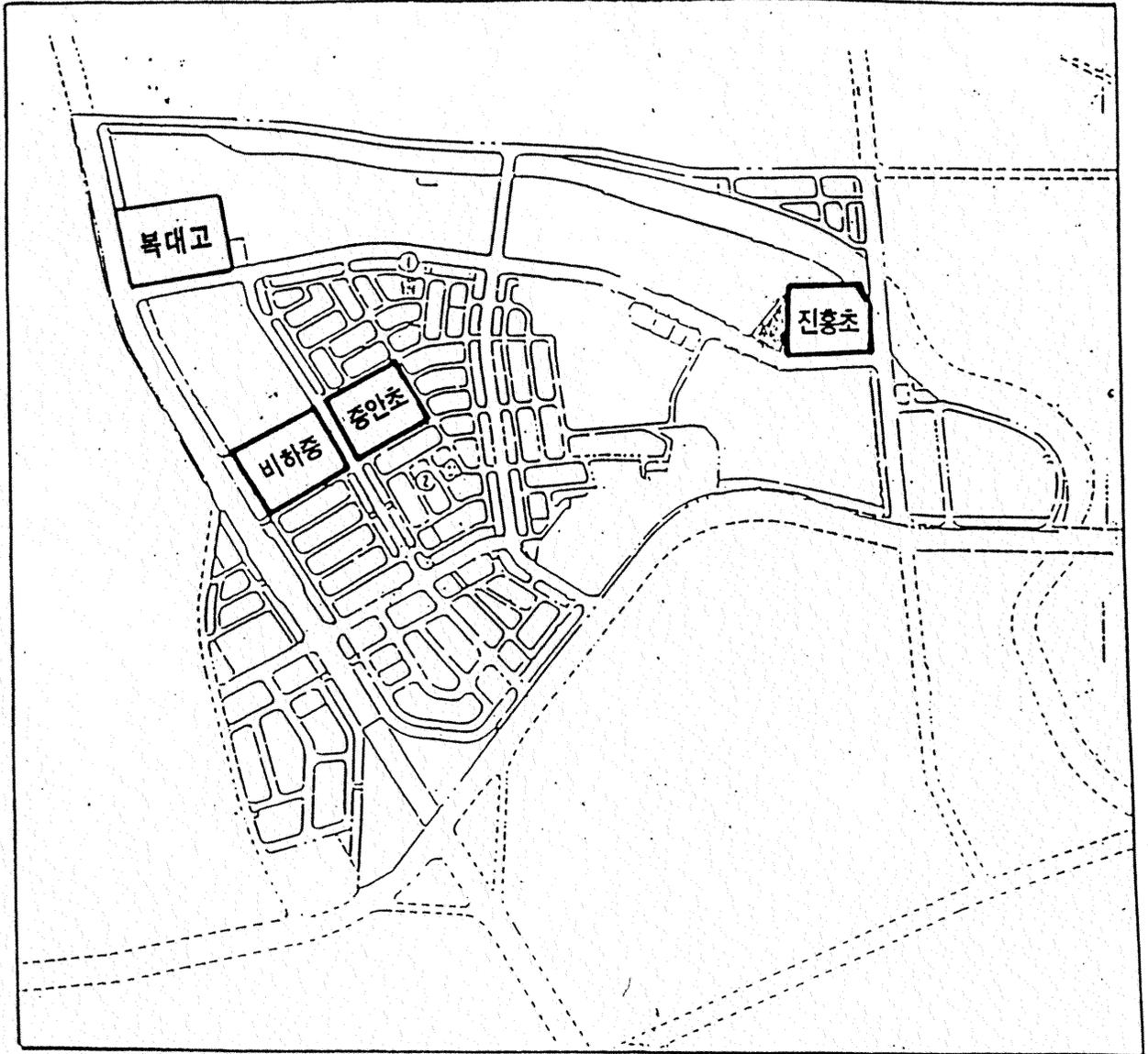
3. 참고사항 : 붙임

- 신설학교 위치도
- 근거법령 발췌서

용암 2지구 학교용지 위치도



하복대지구 학교용지 위치도



근거법령 발췌서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등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별첨8)

議案番號	第 111-1 號
議 決 年 月 日	2000. 3 . . (第 回)

2000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第1回 變更計劃案

提 出 者	忠清北道教育監
提出年月日	2000. 3 . 18 .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제1회變更計劃(案)

議案 番號	111-1
----------	-------

提出年月日：2000 . 3 . 18

提出者：忠清北道教育監

1. 提案事由

公有財産의 取得事由가 追加 發生함에 따라 地方財政法 제77조 및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0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제1회 變更計劃을 樹立하여 忠清北道教育委員會의 議決을 얻고자 함.

2. 主要骨子

公有財産의 取得

0 (가칭)북대高等學校	학교부지매입	15,690.3m'
0 清州高等學校	特別教室, 學生化粧室, 階段室, 連結通路 增築 포장, 배수로설치	825m' 2층
0 忠北高等學校	特別教室, 學生化粧室, 階段室, 連結通路, 職員化粧室 倉庫 增築 포장설치	960m' 1층
0 忠州高等學校	特別教室, 學生化粧室, 階段室, 連結通路, 職員化粧室 增築 옹벽, 담장설치	850m' 2층
0 清州女子高等學校	特別教室, 學生化粧室, 階段室, 連結通路 增築 배수로설치	805m' 1층
0 清州 (가칭)명암초등학교	학교부지매입	12,509m'
0 忠州女子中學校	特別教室, 階段室, 學生化粧室 增築	934.2m'
0 堤川 德山初等學校	教室, 階段室, 급식소, 化粧室, 倉庫, 宿直室 增築	1,311m'
0 堤川中學校	特別教室, 階段室, 급식소, 學生化粧室 增築	1,404m'
0 加德中學校	教室, 階段室, 學生化粧室, 職員化粧室, 宿直室 改築	2,088m'
0 鎭川中學校	特別教室, 階段室, 學生化粧室 增築	750m'
0 槐山 延豐初等學校	多目的室 및 視聽覺室 增築	916.35m'

3. 提案根據

0 地方財政法 제77조 및 同法施行令 제84조

0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 제34조

4. 2000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제1회 變更計劃書:덧붙임

5. 關係法令拔萃書 : 덧붙임

6. 設明資料 : 별 책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제1회變更計劃書

公有財産管理計劃總括表(7-1)

【機關名：忠清北道教育廳】

(單位：㎡, 千 元)

區 分		上 半 期			下 半 期			合 計		
		件數	數 量	金 額	件數	數 量	金 額	件數	數 量	金 額
取 得	計	土地			2	28,199.3	12,181,244	2	28,199.3	12,181,244
		建物			10	10,843.55	8,016,718	10	10,843.55	8,016,718
		其他			4	6	103,848	4	6	103,848
	1. 買 入	土地			2	28,199.3	12,181,244	2	28,199.3	12,181,244
		建物								
		其他								
	2. 교관 으로취 득	土地								
		建物								
		其他								
3. 其他 取得	土地									
	建物			10	10,843.55	8,016,718	10	10,843.55	8,016,718	
	其他			4	6	103,848	4	6	103,848	
處 分	計	土地								
		建物								
		其他								
	4. 賣 却	土地								
		建物								
		其他								
	5. 讓 與	土地								
		建物								
		其他								
	6. 기타 處分	土地								
		建物								
		其他								

取得對象 財産目錄(7-2)

【기관명 : 忠淸北道教育廳】

(單位 : m², 천 원)

一連 番號	財 産 の 表 示				推定價額	取得 時期	取 得 事 由	取得財産 所有者 住所.姓名	備考
	機關名	區分	所 在 地	數 量					
1	(가칭) 북 대 고	土 地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2457	15,690.3	8,274,200	하반기	2003학년도 개교예정	教育監	1쪽
2	淸州高	建 物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869	825	655,350	"	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	2쪽
3	忠 北 高	공작물 建 物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33	2종 960	40,568 698,750	"	외부환경개선 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	3쪽
4	忠 州 高	공작물 建 物	" 충주시 호암동 558	1종 850	19,980 648,550	"	외부환경개선 7차교육과정및 교육환경개선	"	4쪽
5	淸州女高	공작물 建 物	" 청주시 상당구 윤량동 534	2종 805	36,300 595,350	"	외부환경개선 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	5쪽
6	(가칭) 명암초	土 地	금천동 용암2택 지개발지구	12,509	3,907,044	"	2002학년도 개교예정	"	6쪽
7	忠州女中	建 物	충주시 교현2동	934.2	693,983	"	교육환경개선	"	7쪽
8	堤川 德山初	建 物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422-1	1,311	1,241,645	"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	"	8쪽
9	堤川中	建 物	제천 서부동250	1,404	776,504	"	교육환경개선	"	9쪽
10	加 德 中	建 物	청원군 가덕면 수곡리 255	2,088	1,415,245	"	"	"	10쪽
11	鎭 川 中	建 物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462	750	611,341	"	교육환경개선	"	11쪽
12	槐山 延豊初	建 物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62	916.35	680,000	"	교육환경개선	"	12쪽
계		토 지	2교	28,199.3	12,181,244				
		건 물	10교	10,843.55	8,016,718				
		공작물	4교	6종	103,848				
		계			20,301,810				

關係法令拔萃書

□ 地方財政法 제77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제77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取得과 處分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地方財政法施行令 제84조(公有財産의 管理計劃)

제84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法 제7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의 管理計劃에 관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은 때에는 地方自治法 제35조 제1항제6호의 規定에 의한 重要財産의 取得·處分에 관한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法 제7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公有財産의 管理計劃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豫定價格이 取得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市·郡·自治區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處分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市·郡·自治區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豫定價格의 基準은 土地에 있어서는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해당토지의 개별·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제10조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 算定한 金額을 말한다)로 하고, 建物 및 其他 財産에 있어서는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한 時價標準額으로 한다.

2. 土地에 있어서 取得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市·郡·自治區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處分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市·郡·自治區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第8條(教育委員會의 議決事項)

第8條(教育委員會의 議決事項) ①教育委員會는 당해 市·道의 教育·
學藝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市·道議會에 제출할 條例案
2. 市·道議會에 제출할 豫算案 및 決算
3. 市·道議會에 제출할 特別賦課金·使用料·手數料·分擔金 및 加入金の
賦課와 徵收에 관한 사항
4. 市·道議會에 제출할 起債案
5.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한 사항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處分에 관한 사항
7.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置·관리 및 處分에 관한 사항
8. 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豫算의 義務負擔이나 權利의 포기
에 관한 사항
9. 請願의 受理와 처리
10. 外國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法令과 市·道 條例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②第 1 項 第5號 내지 第11號에 規定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教育委員會의
議決은 市·道議會의 議決로 본다.

忠淸北道教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 第34조(公有財産管理計劃)

제34조(公有財産管理計劃) ①教育監은 地方財政法제77조 및 令 제84조의 규
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取得·
處分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教育委員會의 의
결을 받아 公有財産을 取得·處分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追加更正豫算 編成 전에 變更計劃을 作成하여
教育委員會의 議決을 받아야 한다.

(별첨9)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제1회變更計劃(案)

設 明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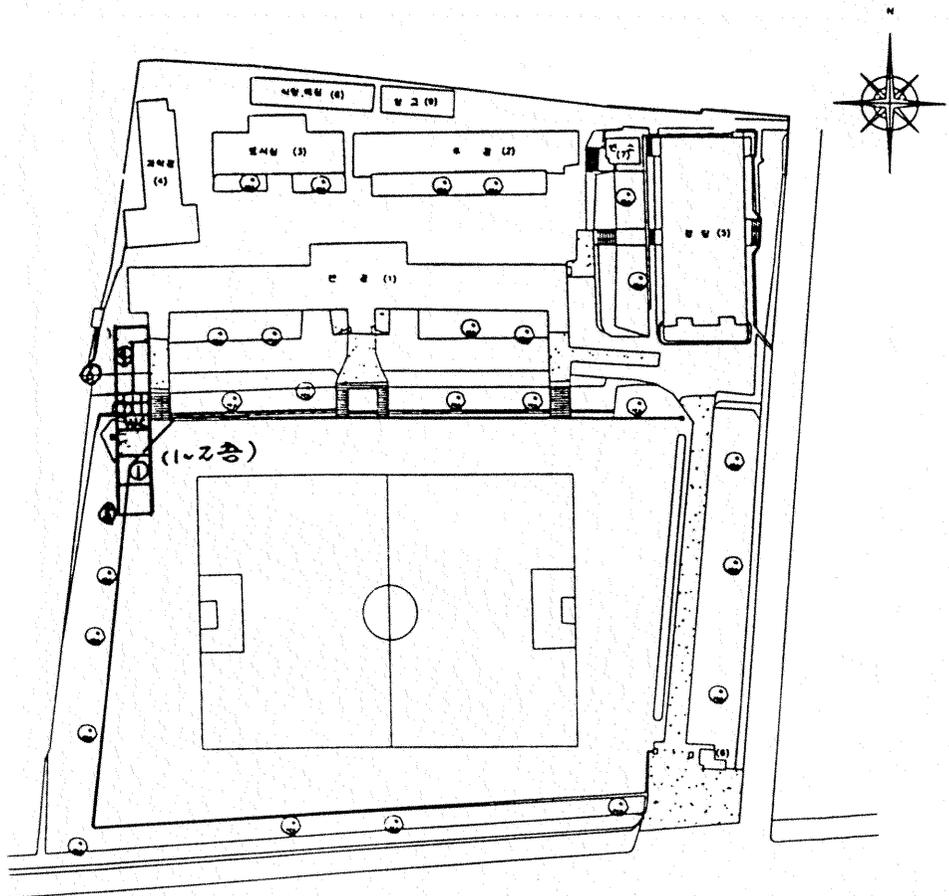
(가칭)복대고등학교 토지 취득 위치도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취득금액 (천원)	사유
토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57	학	15,690.3	8,274,200	2003학년도 개교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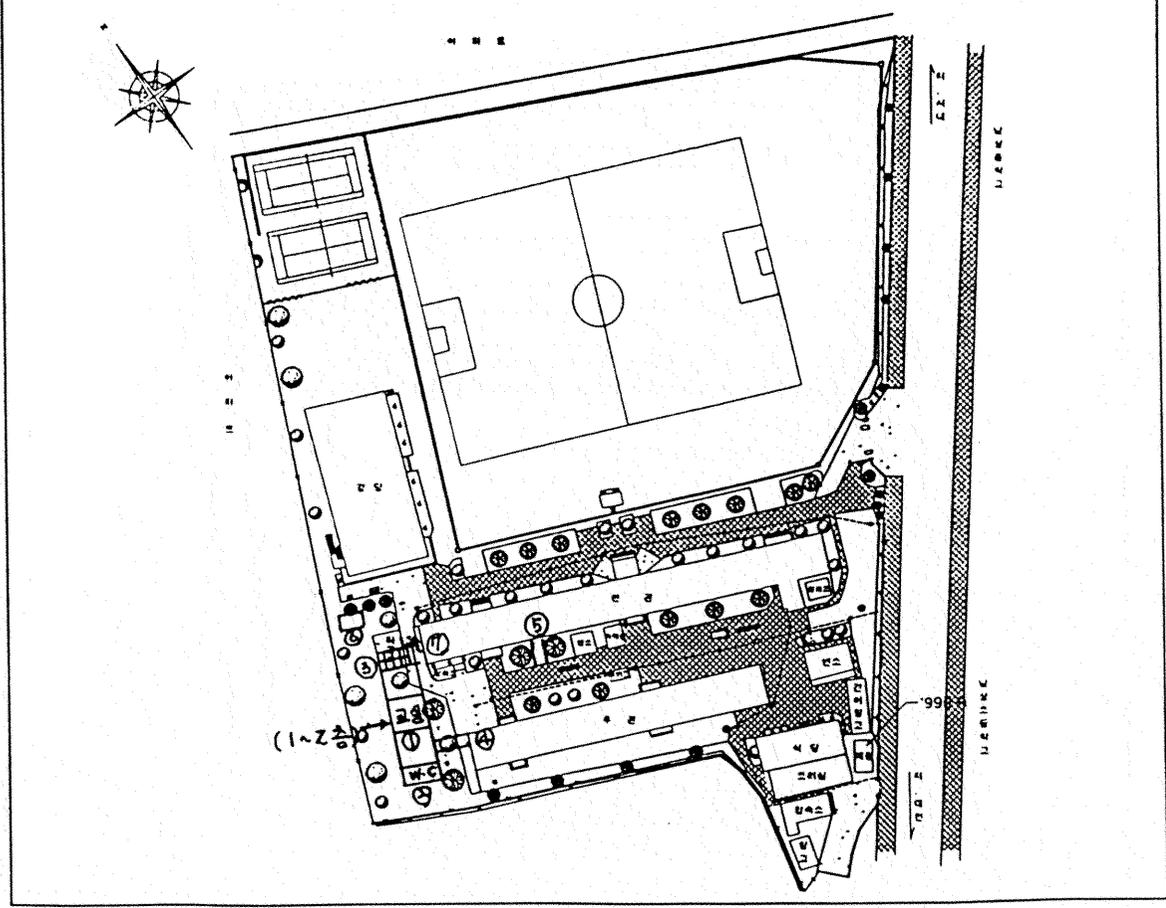
청주고등학교 건물 및 공작물취득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m ² /m)	취득금액 (천원)	사 유
①특별교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869	철콘슬	540	322,200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②학생화장실			"	120	162,600	"
③계단실			"	135	80,550	"
④연결통로			"	30	90,000	"
⑤포장			철·콘	492	26,568	외부환경개선
⑥배수로			"	100	14,000	"
계					695,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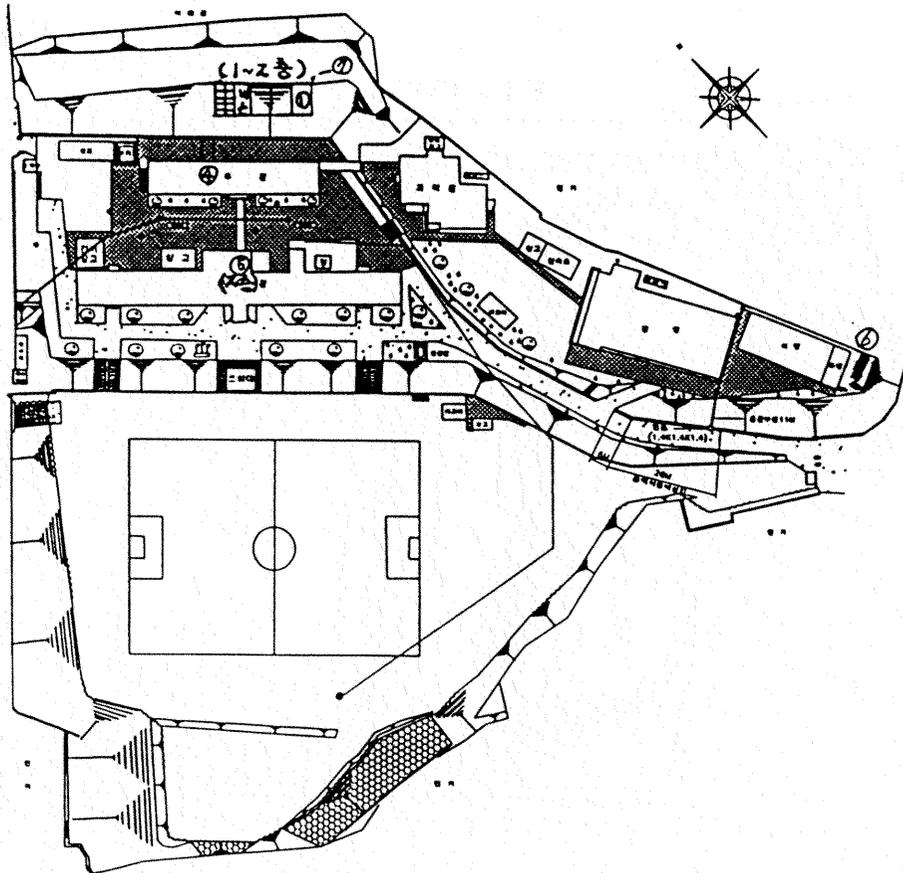
충북고등학교 건물 및 공작물취득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취득금액 (천원)	사유
①특별교실	청주시 흥덕구	233	철콘슬	540	322,200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②학생화장실	분평동		"	120	162,600	"
③계단실			"	135	80,550	"
④연결통로			"	20	60,000	"
⑤직원화장실			"	45	53,200	교육환경개선
⑥창고			조립식	100	20,200	부족시설확충
⑦포장			철·콘	370	19,980	외부환경개선
계					718,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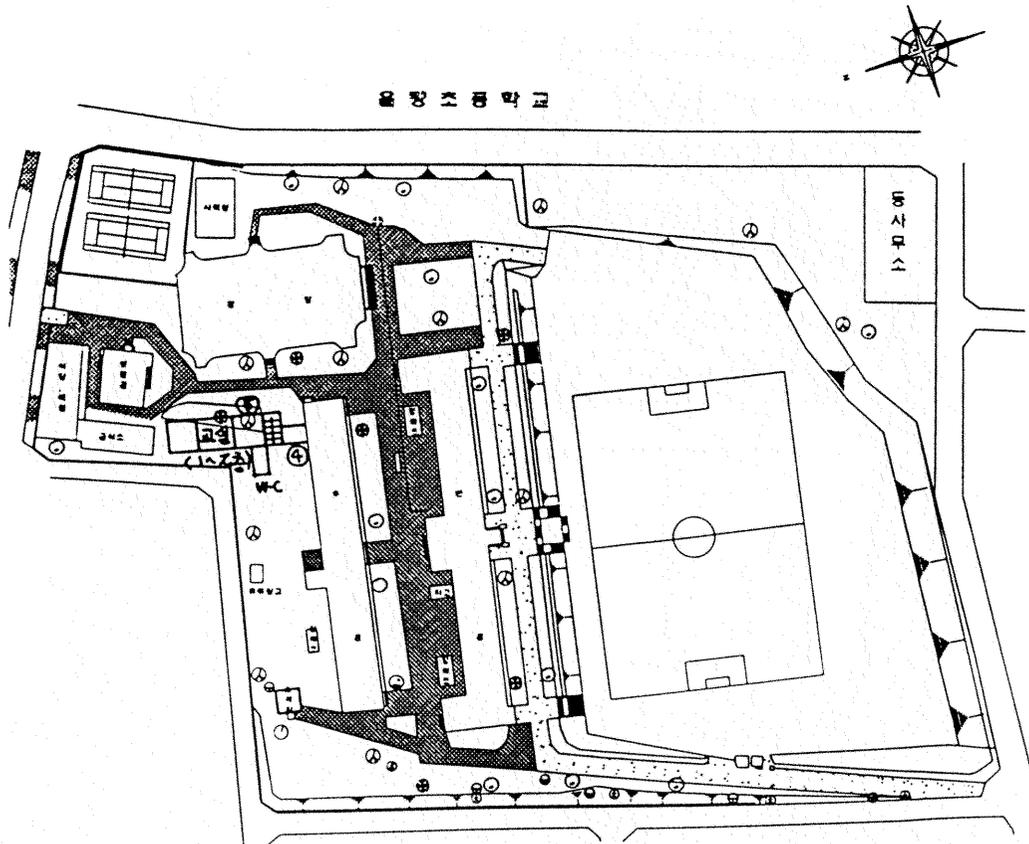
충주고등학교 건물 및 공작물취득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m ² /m)	취득금액 (천원)	사유
①특별교실	충주시 호암동	558	철콘슬	540	322,200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②학생화장실			"	120	162,600	"
③계단실			"	135	80,550	"
④연결통로			"	10	30,000	"
⑤직원화장실			"	45	53,200	교육환경개선
⑥옹벽			철·콘	53	15,900	외부환경개선
⑦담장			웬스	170	20,400	"
계					684,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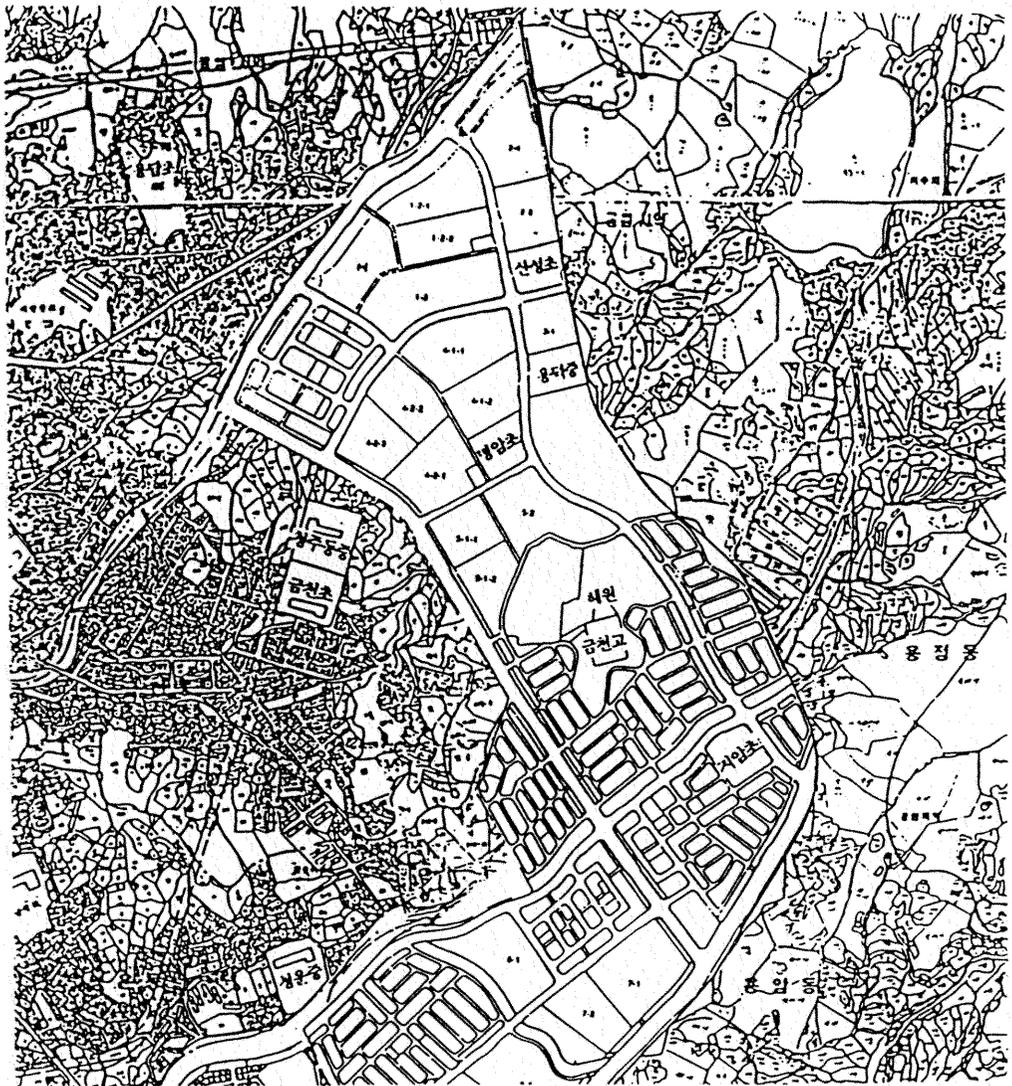
청주여자고등학교 건물 및 공작물취득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취득금액 (천원)	사유
①특별교실	청주시 상당구	534	철콘슬	540	322,200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②학생화장실	율량동		"	120	162,600	
③계단실			"	135	80,550	
④연결통로			"	10	30,000	
⑤배수로			철·콘	50	7,000	
계					602,350	외부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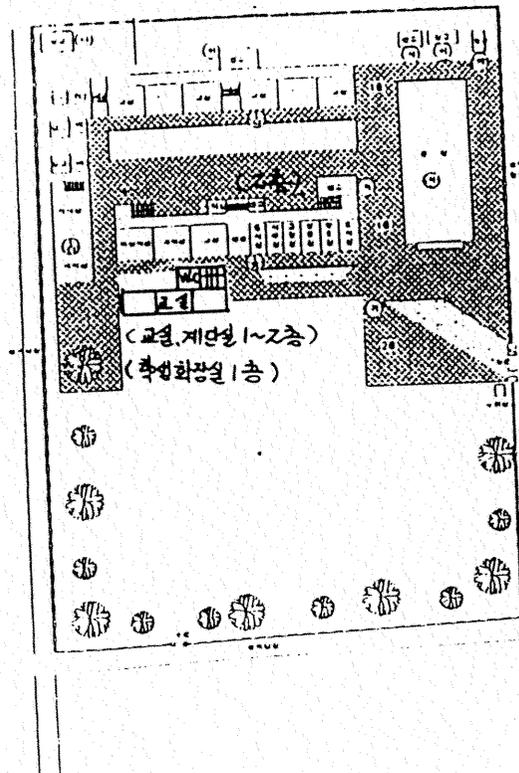
(가칭)명암초등학교 토지 취득 위치도

구 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	취득금액 (천원)	사 유
토 지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용암2지구택지개발지구	4-1블럭	학	12,509	3,907,044	2002년3월 개교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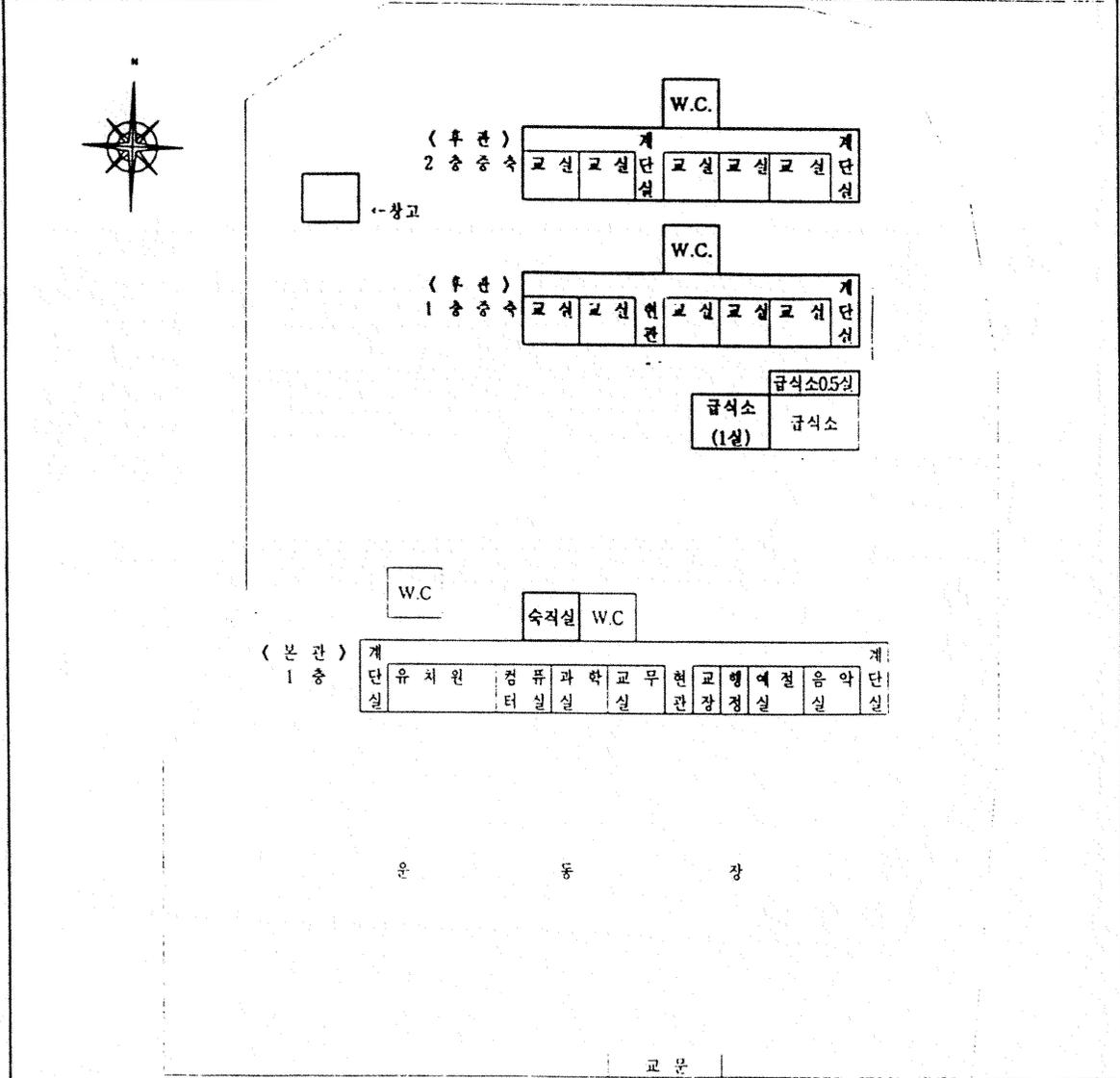
충주여자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	취득금액 (천원)	사 유
특별교실	충주시 교현2동	369-1	철,콘,슬	826.2	477,683	교육환경개선
계 단 실			"	54	53,700	
학생화장실			"	54	162,600	
계				934.2	693,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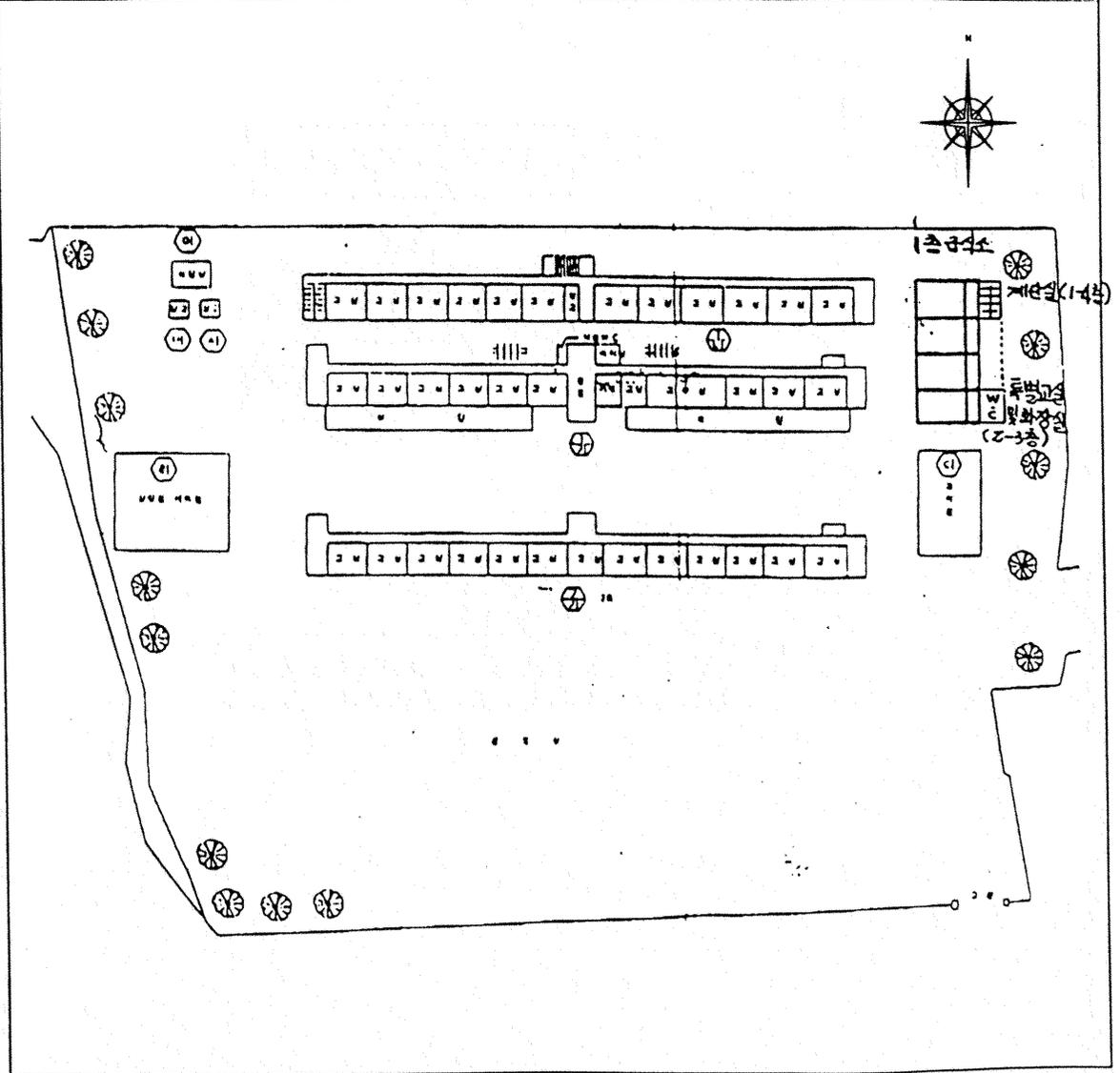
덕산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	취득금액 (천원)	사 유
교실및 부속시설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422-1	철,콘,슬	1,311	1,241,645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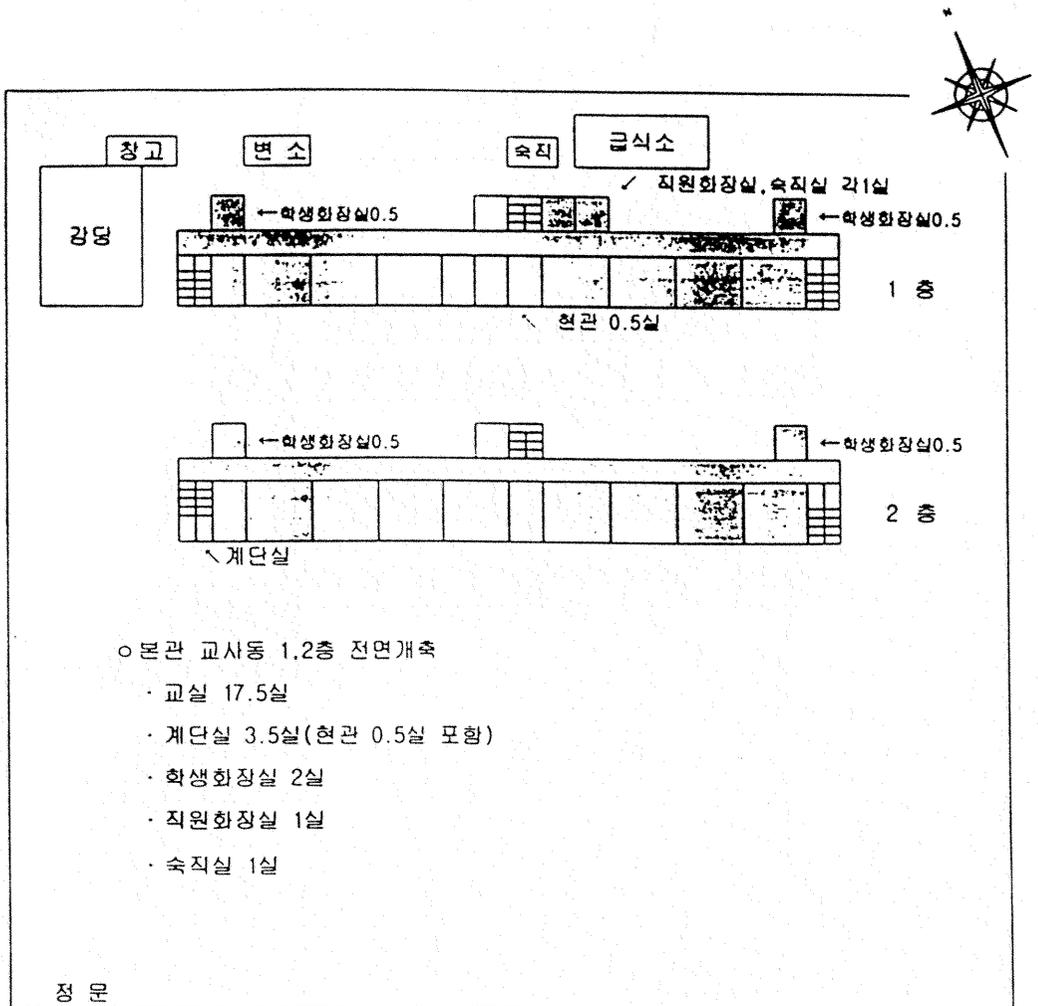
제천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	취득금액 (천원)	사 유
특별교실및 부속시설	제천시 서부동	250	철,콘,슬	1,404	776,504	교육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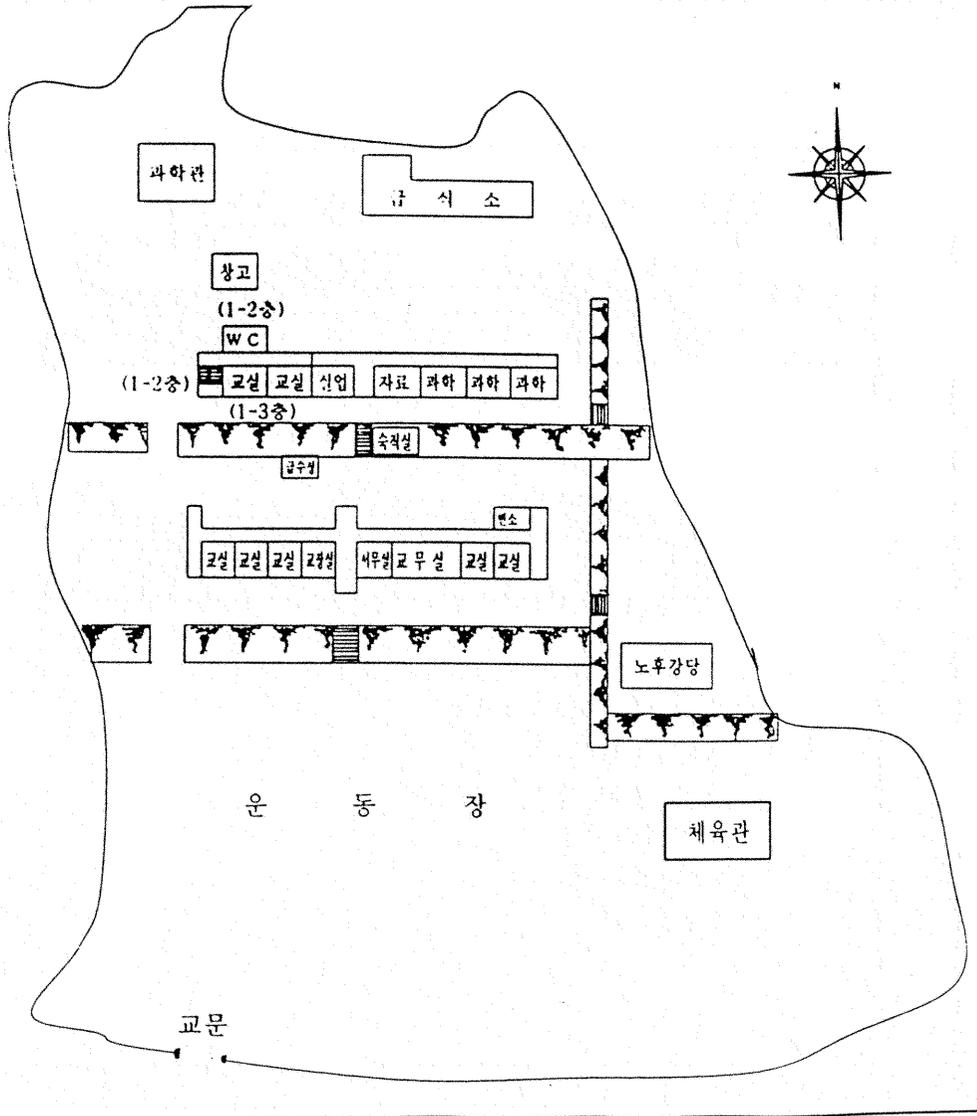
가덕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m ²)	취득금액 (천원)	사유
교실 및 부속시설	청원군 가덕면 수곡리	255	철,콘,슬	2,088	1,415,245	교육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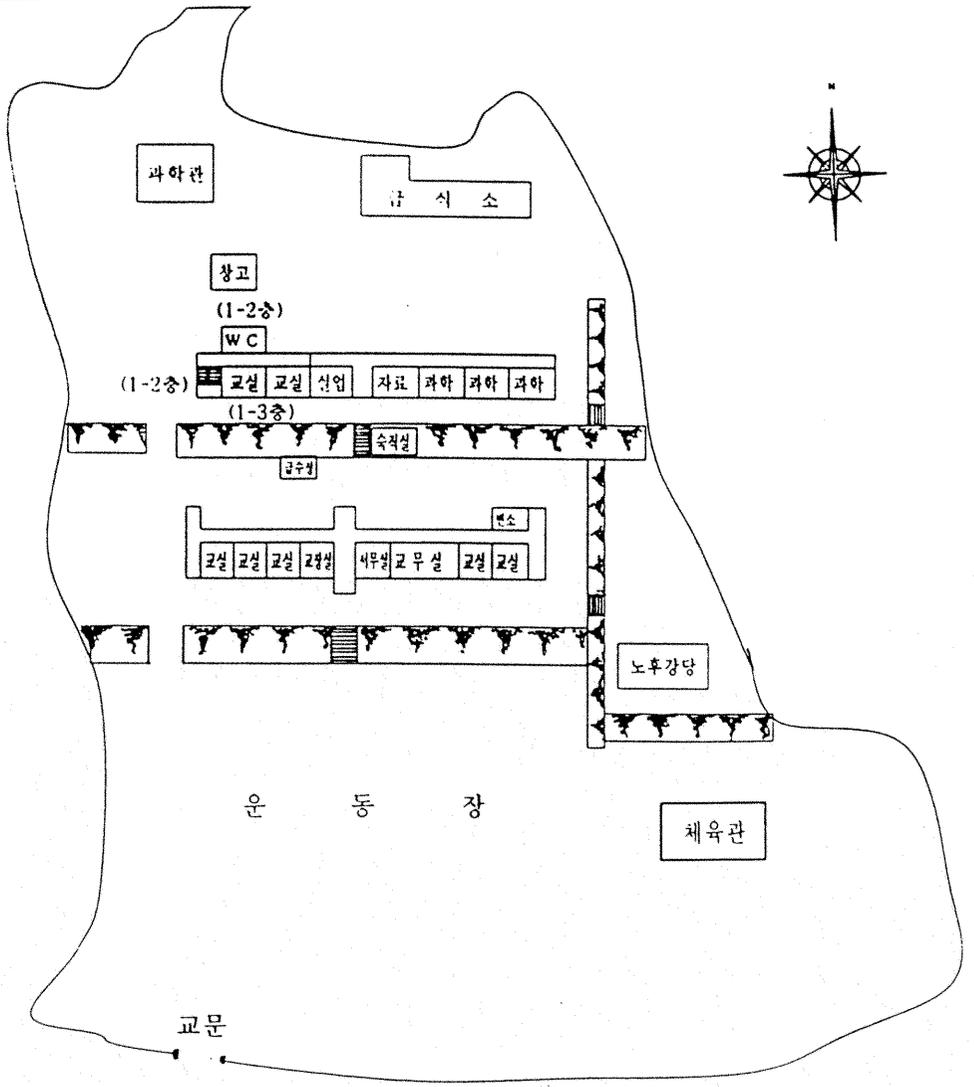
진천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m ²)	취득금액 (천원)	사유
특별교실및 부속시설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462	철,콘,슬	750	611,341	교육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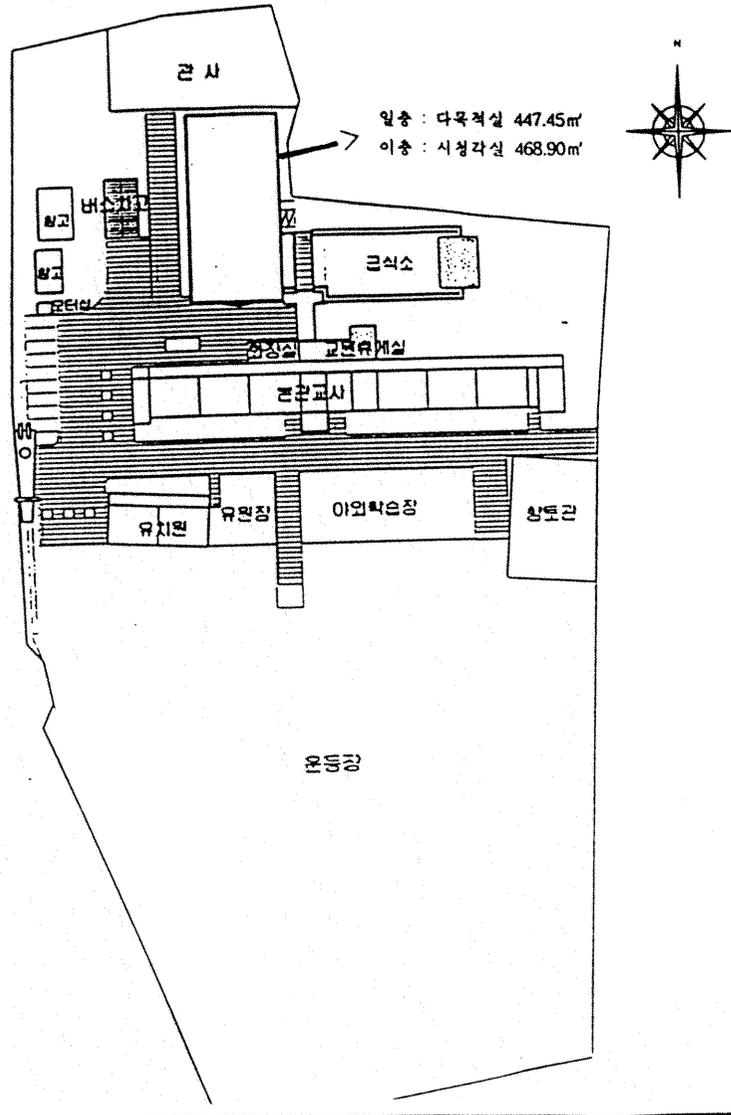
진천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취득금액 (천원)	사유
특별교실및 부속시설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462	철,콘,슬	750	611,341	교육환경개선



연풍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취득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실 및 시청각실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62	철,콘,슬	916.35	680,000	교육환경개선



(별첨10)

의안번호	제 111 호
의 결	2000. 3. .
년 월 일	(제 회)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3. 18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 - 8
----------	---------

제출년월일 : 2000. 3. 18.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527억 4,336만 3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587억 9,778만 3천원이 증액된 8,115억 4,114만 6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8억 9,159만 4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2,462만 3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58억 8,156만 6천원을 증액하여,
- 세출예산 학교교육 514억 815만 5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2억 1,923만원, 급여·복지 39억 4,032만 3천원, 교육행정 32억 2,604만 4천원, 기타경비 4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음.

예산(안) : 별책

사항별설명서 : 별책

(별첨11)

(제111회 임시회)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3. 3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목 차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7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99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3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0년 3월 27일
- 다. 상정일자 : 2000년 3월 27일(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7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8일)
 -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가. 개정사유

-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안 제22조제2항).
-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안 제22조제3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안 제22조제4항).
-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기간 확대(안 제22조제7항)
- 퇴직준비휴가의 범위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공무원”으로 확대(안 제22조제8항)

-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였으나,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포함 함(안 제23조).
- 경조사별 휴가대상 확대(별표2)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남·녀평등 이념에 부합한 경조사 특별휴가의 실시, 퇴직준비휴가 대상공무원의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기존의 조례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애 맞추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게 작성되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3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0년 3월 27일

다. 상정일자 : 2000년 3월 27일(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7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8일)
-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가. 개정사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내용중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조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법 조항이 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8명에서 5명을 감축하여 2,823명으로 함 (안 제2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명 감축하고 근거조항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3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0년 3월 27일

다. 상정일자 : 2000년 3월 27일(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7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8일)
-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가. 개정사유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이 조정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근무상한연령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8조제1항).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시킬 수 있던 조항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직권면직 조항 강화(안 제10조제1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11조)
- 군 입대에 의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안 제11조의2)
- 휴직의 효력조항 신설(안 제11조의3)

- 휴직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 군입대 휴직 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및 임용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되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3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0년 3월 27일
- 다. 상정일자 : 2000년 3월 27일(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7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8일)
 -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3월 2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가. 개정사유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도 조례중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병설 및 통합학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안 제2조제1항, 제4항)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법 및 시행령 조항 수정(안 제9조제1항및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제심의 요구권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항 삭제(안 제21조제3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부칙안 제2항, 제3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생수 60명 미만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 정수에 관한 규정의 삭제,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 마련, 학교장의 재심의요구권 삭제 등을 주요골자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12)

(제111회 임시회)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0. 3. 3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예산·결산소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105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105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105
4. 토론 주요내용	105
5. 심사보고 주요내용	106
6. 수정안의 주요내용	109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3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0년 3월 27일
- 다. 상정일자 : 2000년 3월 27일(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0년 3월 27일)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0년 3월 28일)
 -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0년 3월 2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52,743,363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58,797,783천원이 증액된 811,541,146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891,594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24,623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5,881,566천원을 증액하여,
- 세출예산 학교교육 51,408,155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219,230천원, 급여·복지 3,940,323천원, 교육행정 3,226,044천원, 기타경비 4,031천원을 계상하였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0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52,743,363천원보다 58,797,783천원이 증액된 811,541,14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 증가되었음.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811,541,146	752,743,363	58,797,783	7.8% 증가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2,891,594천원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24,623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5,881,56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재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관별	금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57,030 1.5
	지방교육양여금	1,956,314 3.3
	국고지원금	78,250 0.1
	소계	2,891,594 4.9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법정전입금	24,623 0.0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재산수입	13,600 0.0
	입학금및수업료수입	3,769,683 6.5
	사용료및수수료수입	425 0.0
	이월금	52,097,858 88.6
	소계	55,881,566 95.1
합계	58,797,783	100.0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51,408,155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219,230천원, 급여·복지 3,940,323천원, 교육행정 3,226,044천원,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경비 4,03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	성비(%)
학교교육		유치원		966,540		1.6
		초등학교		19,925,344		33.9
		중학교		13,642,001		23.2
		고등학교		16,674,998		28.4
		특수학교		199,272		0.3
		소계		51,408,155		87.4
문화 및 평생교육		평생교육		219,230		0.4
급여·복지		복지·후생		3,940,323		6.7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41,628		0.1
		교육청		765,652		1.3
		지역교육청		1,101,470		1.9
		교육지원기관		1,317,294		2.2
		소계		3,226,044		5.5
기타경비		제지출금		2,241		0.0
		예비비		1,790		0.0
		소계		4,031		0.0
합	계			58,797,783		100.0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제7차 교육과정 교육시설 확보 7,169,692천원
- 교육환경개선시설 16,229,908천원
- 교직원화장실 확충 및 보수 2,145,624천원
- 수용 및 일반시설 확충 7,043,347천원
- 학교전산망 구축 496,900천원
- 멀티미디어교육실 확충 270,000천원
-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 200,000천원
- 교단선진화 968,620천원

○ 직업교육 확충	212,760천원
○ 급식학교 급식기구 구입	595,000천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300,000천원
○ 교무실 환경개선	456,870천원
○ 퇴직수당부담금	1,312,605천원
○ 의료보험부담금	1,909,088천원
○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718,630천원 등임.

나. 삭감내역

삭감액 : 424,500천원

삭감내역 및 사유

○ 공립 공업고등학교 캐쉬서버 확충 △60,500천원

공립 공고 및 상고 18개교에 대한 캐쉬서버확충사업비로 99,000천원유 계상하였는 바, 교육과정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상고 7개교를 제외한 공고 11개교는 차후에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동 재원을 보다 시급한 직립교육비에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60,500천원유 감액하였음.

○ 환경오염방지시설 △364,000천원

고등학교 14개교에 환경오염방지시설(쓰레기소각로)을 설치하고자 364,000천원유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때 투자액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고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음.

다. 종합의견

금번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금과 '99.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제7차 교육과정대비 교육시설 확보, 교육환경개선 및 수용시설 확보, 교원 사기진작 방안 모색을 기본방향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적정히 편성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어학관련 실습기자재 등의 확충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수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국고지원사업 중에는 도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검토해 볼 때 그 사업추진의 성과가 미미하고 학교간 균형발전에 도 다소 부적합한 사업이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3. 31.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나. 수정이유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중 사업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불 때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효과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학교교육(장), 고등학교(관), 과학정보교육지원(항), 학교정보화지원(세항)
 - 캐쉬서버확충 99,000천원중 공립 공고분 60,500천원을 감액함.
- 학교교육(장), 고등학교(관), 운영비지원(항), 기타운영비지원(세항)
 - 환경오염방지시설 364,000천원을 전액 감액함.
- 예비비 24,006,570천원을 24,431,070천원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견(참석위원 : 6명, 찬성위원 : 6명)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0년 3월 31일

제 안 자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중 사업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볼 때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비줄 감액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학교교육(장), 고등학교(관), 과학정보교육지원(항), 학교정보화지원(세항)
 - 캐쉬서버확충 99,000천원중 공립 중고분 60,500천원을 감액함.
- 나. 학교교육(장), 고등학교(관), 운영비지원(항), 기타운영비지원(세항)
 - 환경오염방지시설 364,000천원을 전액 감액함.
- 다. 예비비 24,006,570천원을 24,431,070천원으로 함.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 붙임.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상)학교교육 관)고등학교 항)과학정보교육지원 세항)학교정보화지원
고등학교 캐쉬서버확충 99,000천원을 공고분 60,500천원 감액한 47,000천
원으로 한다.

장)학교교육 관)고등학교 항)운영비지원 세항)기타운영비지원
고등학교 환경오염방지시설 364,000천원을 전액 감액한다.

장)기타경비 관)예비비 항)예비비 세항)예비비
예비비 24,006,570천원을 424,500천원 증액한 24,431,070천원으로 한다.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대비표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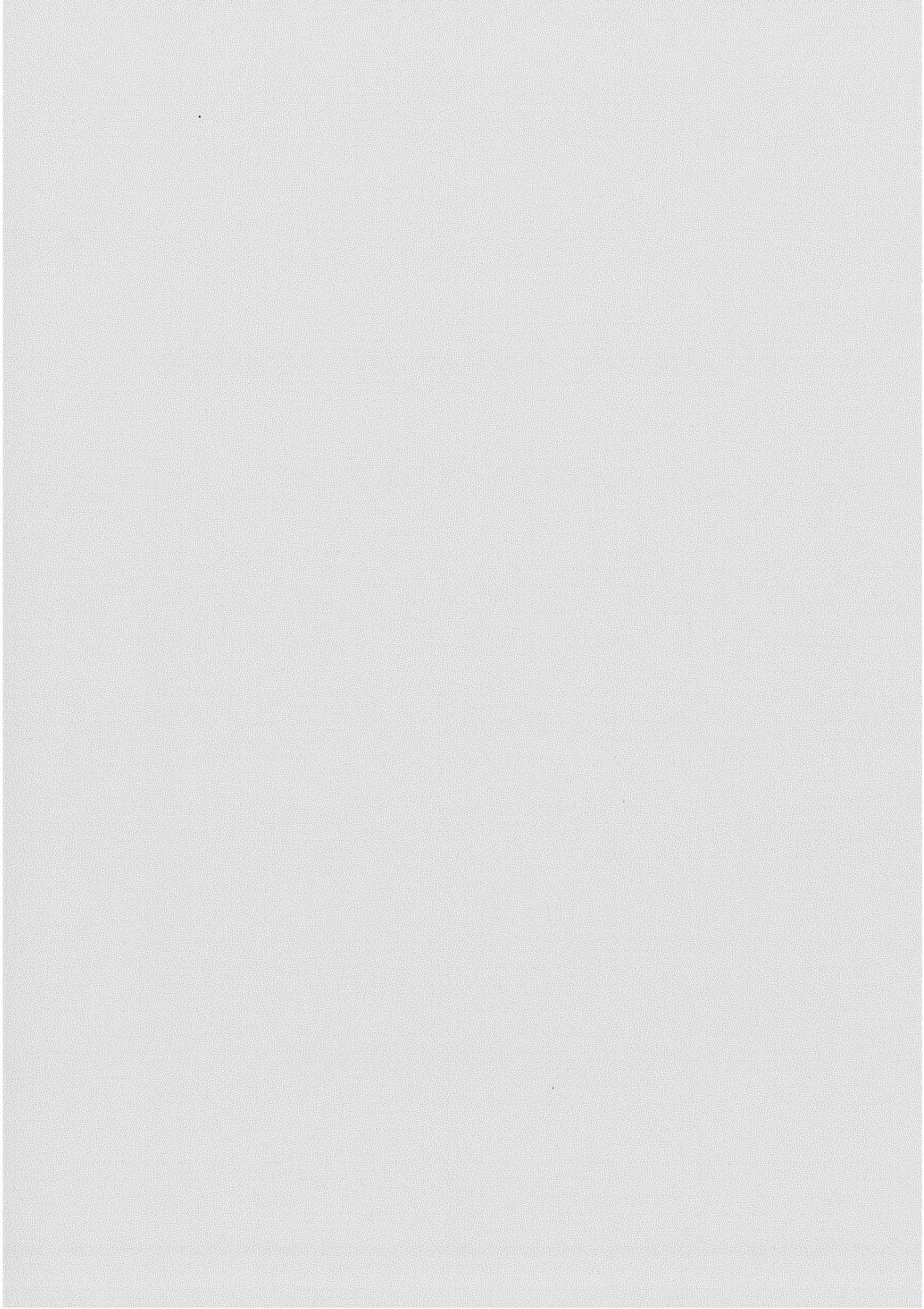
장	과		세	항	교육감제출 예산액	교육위원회의결		예산액	수	정	내	용
	관	항				감	액					
1.	학교교육				287,727,225	424,500		287,302,725				
	4.	고등학교			71,209,732	424,500		70,785,232				
		5.	과학정보교육지원		5,089,277	60,500		5,028,777				
			02.	학교정보화지원	3,989,777	60,500		3,929,277				○ P92. 캐쉬서비스확충(나. 공립공고) △60,500 (99,000 → 38,500)
		7.	운영비지원		35,812,974	364,000		35,448,974				
			05.	기타운영비지원	7,413,320	364,000		7,049,320				○ P132. 환경오염방지시설 (364,000 → 0)
3.	기타경비				30,530,661		424,500	30,955,161				
		3.	예비비		24,006,570		424,500	24,431,070				
			1.	예비비	24,006,570		424,500	24,431,070				
				1. 예비비	24,006,570		424,500	24,431,070				○ P137. 예비비 (24,006,570 → 24,431,070)
			합		811,541,146	424,500	424,500	811,511,146				

第11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2000.3.27 ~ 3.3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3
- II.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7
- III.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5
- IV. 부 록
 - 1. 의사일정(안) 19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3월 27일 (월요일) 11시 40분

議事日程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40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시 41분)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 선출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손만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함)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손만재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만재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만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43분)

●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송진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함)

● 위원장 손만재

송진하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
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진하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 간사 송진하

성실히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44분)

●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29일 사흘간으로 하여 조례안 4건을 심사하
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
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
일 오후에 조례안 4건에 대해 집행청 관계
관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

다.

(11시 45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손만재, 간사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별첨1)

條例 審查 小 委員 會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年 3월 28일 (화요일) 15시 23분

議事日程 (제111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23분 개회)

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 작성에 직접 참여한 총무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조례는 특히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개정된 것을 저희들이 이 조례에 다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조례내용 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을 60일간 임신휴가를 주었는데 그전에는 '허가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하여야 한다' 로 거의 강제규정으로 되고 여성보건휴가를 매월 1일 주는 것, 또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어서 아기를 집에 가서 돌볼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출근을 해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이상 재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장기 휴가를 그전에는 한번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10일중 7일을 하던 5일을 하면 나머지를 찾아 쓰질 못했는데, 바꾸어서 재직기간중에는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5일 5일을 나누던지 1,2,3회로 나눌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퇴직준비휴가는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

무원에게만 주었는데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은 물론이고 조기퇴직이라고 해서 명예나 정년퇴직이 아닌 일반 조기퇴직도 퇴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휴가 일수가 그전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30일 이상 한달 이상 들어가는 휴가에는 공휴일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조사 휴가를 확대했는데 여기 표에서 보시면 그전에는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했을때만 5일의 특별휴가를 주었는데 여기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까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휴가일수는 늘어나는 것은 크게 없지만 그 대상이 소폭되었던 것이 확대되었습니다. 복무조례는 그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을 그 조례에 따라 개정해 맞추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의 좌석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광수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 김광수 위원

경조사에서 보면은 상당히 예우를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에 한해서는 7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었고 외
중조부모까지도 5일간을 주었네요,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 총무과장 이기수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만 가능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많이 완화·확대되고 했는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인데 개정근거가 국가공무원복무규
정이란 말이요. 교원은 어떻게 되나요?

● 총무과장 이기수

교원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동등한 대
우를 받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원들 교장이나 교감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때 퇴직한 날까지 근
무를 했던 말이예요 퇴직준비 휴가가 없었
지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앞으로는 할
수 있나요?

● 총무과장 이기수

할 수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교장이 정년퇴직으로 교장· 교감
이 퇴직으로 둘 다 휴가를 할 때에는 어떻
게 하나요?

● 총무과장 이기수

동시에는 불가능할거예요, 교장선생님이
하시면 직무대리하든지 교감선생님이 하시
면 교장선생님이 하셔야죠.

● 송진하 위원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정년퇴직 공로연수 6
개월 앞두고 공로연수 휴가 들어가면 후임
발령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교육계는
어떻게 하나요?

● 총무과장 이기수

공로연수는 교육공무원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만재

송진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상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이충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충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
변을 종결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

조례증개정조례안

(15시 30분)

●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사유는 각 시·도교육청에 총정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총정원제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정원등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육부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에 총정원이 2,828명이었는데 5명이 감축이 되어서 2,823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2일날 제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교육부에서 와서 그 내용을 감축해 놓은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99년보다 5명이 줄었습니다. 이걸 왜 줄었냐 하면 교육부에서는 전체 교육부산하에 지방공무원이 줄은 것은 아닌데 우리 도교육청 같이 통·폐합이 작년에 9월1일자 되면서 학교에 기능직이라든지 또는 인원도 줄고 또는 반대로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인천·울산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는 늘어나는데 총정원수를 늘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줄어드는데 정원을 늘어나는 곳으로 정원 조정을 교육부에서 한것입니다. 저희도는 5명

이 줄었습니다. 준용규정이 하나 있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만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이상일위원님

● 이상일 위원

예 5명을 줄이는데 직급은 어떤 직급을 줄이라는 것은 없나요?

● 총무과장 이기수

직급은 없고 총 숫자만 줄이고 직급은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야됩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만재

이기수위원님

● 이기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김광수위원님

● 김광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본 개정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15시 32분)

●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요골자 내용은 비상계획담당관이 있습니다. 5년간의 임기로 군출신이 되는데요, 소령제대를 했다든지 대위제대를 했다든지, 5년간 임기를 정하고 거기서 5년이 지나면 2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행자부에서 기준안이 온 것인데 앞으로는 5년이라는 한시적으로 하지 않고 정년을 두도록 되었습니다. 비상 5급상당 이하는 55세까지 정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것입니다. 상위법에서도 기준안이 바뀌어서 비상계획담당관의 근무연령 제한을 이제 55세로 거의 정년 비슷하게 되었습니

다. 그 나머지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개정한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자체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만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송진하위원님?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신체장애로 6월이상 근무로 되어 있고 6월이상이 휴가기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휴가기간은 몇 일간인가요?

● 총무과장 이기수

병가는 2개월, 공무원 휴가는 연 23일 그 기간을 다 찾아도 자기 직위에 복귀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정직이기 때문입니다.

● 송진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이상일위원님?

● 이상일 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이충원위원님?

● 이충원 위원

에, 없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본 개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
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15시 35분)

●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
에 대해 학교운영지원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지원담당 음영호

학교운영지원담당 음영호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도
조례중에서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
는 운영위원회 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도록 했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초·중등교
육법시행령에서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위임
이 되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학생수 규모
에 따라서 위원정수를 지정해 주었기 때문

에 이 내용을 삭제하고요. 병설 및 통합학
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저희들이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래서 위원 정수를 병설 또는 통합학교는 전
체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수에 적용하
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 법규조항이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수정하
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운영 및 심
의사항에 대해서 학교장이 부당하다고 생각
되었을 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초·중등교육법에서 삭제가 되었습
니다. 삭제가 되고 학교장이 심의된 내용과
달리 시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에는 다시 시정, 지시할 수 있는 규정이 들
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심의 요구는
필요가 없어서 삭제합니다. 또 한가지는 학
교운영위원회 정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
재 재임하고 있는 초과정원에 대한 임기를
임기 종료시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경과 규
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손만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
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충원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이상일위원님?

● 이상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송진하위원님?

● 송진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김광수위원님?

●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초·중등학교법시행령 58조에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에는 5인 이상 8인 이내, 200명 이상 1,000명까지는 9인에서 12명 이내, 학생수가 1,000명에서 그 이상인 학교는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 5인 이상 8인,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는 것은 학교 형편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정할 수 있는거예요?

● 학교운영지원담당 음영호
예, 학교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럼 규정은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 학교는 5명으로 할 것이다, 9명으로 할 것이다 15인까지 할 수 있는데 13명까지 할 것이다. 학교장이 이렇게 정합니까?

● 학교운영지원담당 음영호
학교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학생수 200명 미만인 학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5명에서 8명을 하면은 의사결

정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대다수 8명입니다. 학교장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몇 명으로 정하자 하는 것은 만들지 않으나 시행령에 의해서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 김광수 위원
학교규정이라 하면 교장 단독으로 하나요, 학교직원회에서 결정하나요?

● 학교운영지원담당 음영호
구체적으로 교무회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만재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제111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손만재, 간사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3월 29일 (수요일) 11시 29분

議事日程 (제111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9분 개회)

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만재

(11시 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

(제111회-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안

(11시 31분)

●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
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11시 32분)

●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
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
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3분)

● 위원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운
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
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침과 아울러 본
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손만재, 간사 송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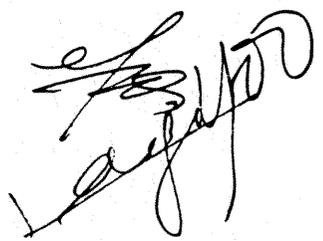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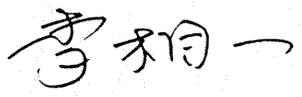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4. .

위원장	손만재	
간사	송진하	
위원	김광수	
위원	이기수	
위원	이상일	
위원	이충원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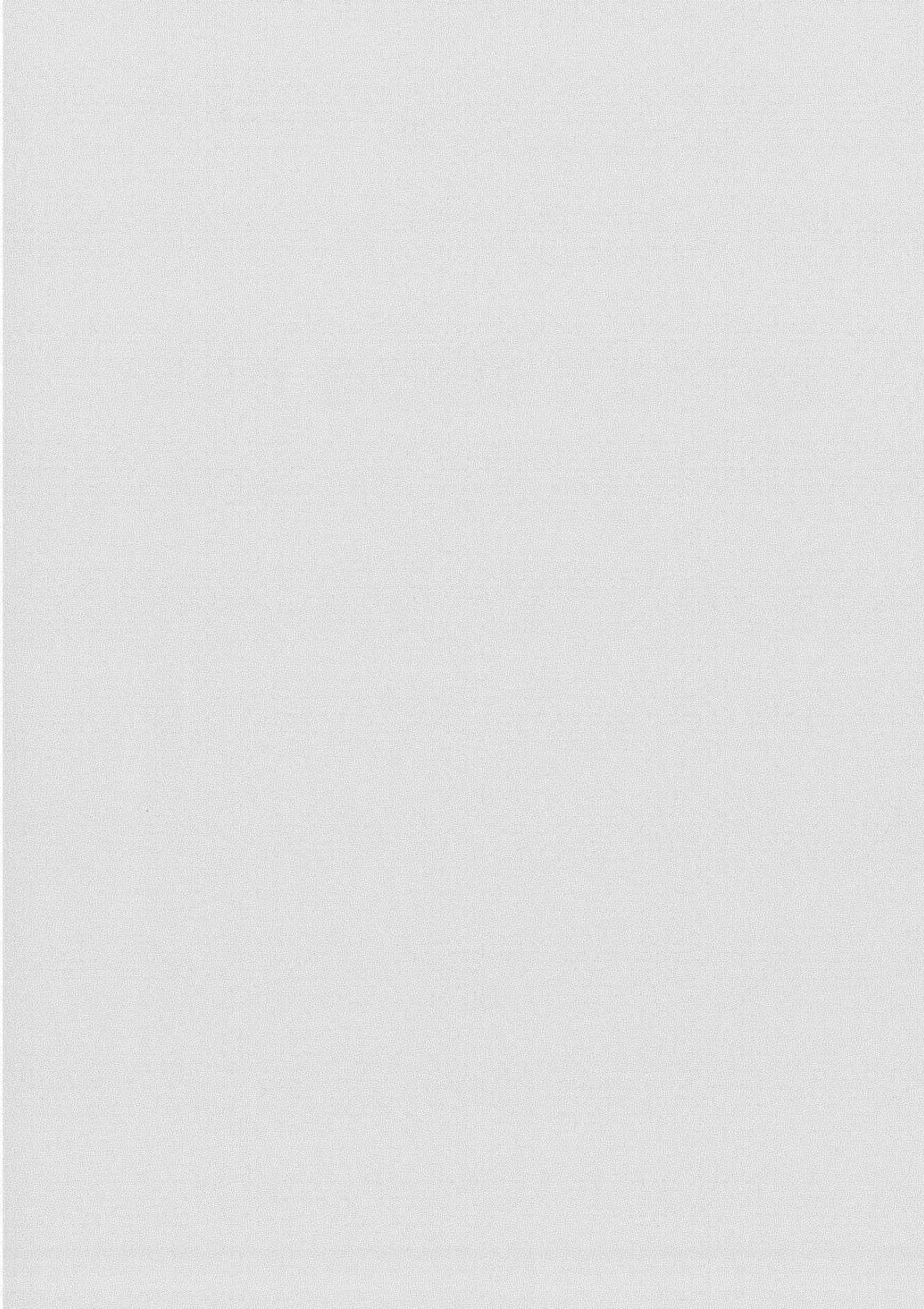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3. 27 (월) 11:4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00. 3. 28 (화) 10: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 3. 29 (목) 11:00~	[제3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폐회	

第11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2000.3.27 ~ 3.3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3
II.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7
III.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37
IV.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39
2.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자료	41
3. 서면답변자료	5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3월 27일 (월요일) 11시 32분

議事日程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32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1시 34분)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 선출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만재 위원

김광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함)

● 위원장 직무대행 승진하

김광수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임을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선출의건

(11시 36분)

●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제2항 감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기수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 모두 “좋습니다” 함)

● 위원장 김광수

이기수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기수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김광수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37분)

●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광수, 간사 이기수,
위원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3월 28일 (화요일) 10시 04분

議事日程 (제11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회)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손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관리과장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주요사업설명자료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자료 - (별첨2)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기획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좌석순으로 하고 각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청주·충주·제천 그리고 청원교육청 관리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시다고 하니까 이충원위원님 쪽에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실 때에는 본청 관계관계서는 성명을 대주시고 소상하고 정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 이충원 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내에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며칠전에 교육감님께서 애사를 당하셔서 여러 가지로 수고들 하시고.....

● 위원장 김광수

말씀중에 죄송한데, 먼저 세입부문부터 할까요?

● 이기수 위원

바쁘신데 전체적으로 하시지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 위원장 김광수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하시죠.

● 이충원 위원

그럼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기획관리과 중간에 보면 학교교육비중에 잔

반처리대 약 4억정도이네요, 20개교면 고등학교것만 이지요, 먼저 이것 수의계약 했던건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액수가 많기 때문에 여쭙보는 것입니다.

20개교가 대개 규격이 같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용량에 따라서 규격이 같습니다.

● 이충원 위원

다음에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물함이 있습니다. 먼저는 26만원인가 27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때에 12조, 20조, 300조 320조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제가 봐도 약 8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으네요, 먼저 제가 이것 할 때에 과장님께서 막대한 7억이예요 7억이기 때문에 말썽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위원님이 좋다고들 하셔서 해야한다고 했는데 세사람인가 두사람이 다 수의계약 했어요 어떤 것은 합판으로 해서 못을 박을 수가 없다는 불평이 나오고 어떤 것은 아주 좋은 것이 들어 왔답니다. 어떤 것은 박스로 해서 들어온 것이고 2만1,000원에 들어왔는데 불평이 또 있어요 그게 2만5,000원 내지 2만6,000원인데 나는 2만1,000원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납품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사람은 1만8,000원이면 살수 있는 것인데 2만1,000원 샀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을 분명히 아시고서

새로 정한 것인가, 먼저대로 한것인지 궁금하고, 많아도, 적어도 걱정이거든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거기에 나와 있는 12조는 혜화학교에 학급중설 되면서 특별히 12조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가자료정보지라든지 아니면 조달단가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입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보고 합니다.

● 이충원 위원

예, 136페이지 보시면요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92대가 들어가고 133만8,000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고등학교만 들어갑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본청 직원분입니다.

● 이충원 위원

예, 152페이지 보면은 교문 및 담장 보수 해가지고 1실, 사학재단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영동상고입니다.

● 이충원 위원

다음에 153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보면 메쉬웬스 그게 유리창처럼 된거지요?

● 시설과장 오형근

시설과장 오형근입니다.

일반웬스는 망으로 되어있고 메쉬웬스는 철선이 직선으로 되어있고 중간에 발이 두 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참 비싸네요, 12만원씩인데 1m당. 저는 유리창처럼 된 것 인줄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본청은 다 여쭙보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나빠서.....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쪽 학교 교육비하고 그다음 55쪽 관서운영비에 전문 행정연수경비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주원

54쪽은 유치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55쪽은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은 초등학교에 대한 연수경비이고 55쪽은 초등학교연수에 대한 예비입니다. 경비와 여비를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8쪽 종합축제는언제 합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입니다.

이것은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 이상일 위원

어느 학교에서 합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종합축제는 공고에 있는 학생들 공동실습소에서 합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순회코치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그 순회코치 정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예산 60명으로 되어 있었요, 이번에 국가에서 소년체전에 출전 때문에 각시·도 교육감회의와 평생체육과장 회의에서 국가에서 5억을 보조 안하면 소년체전 출전 안한다 하는 의미에서 금년도에 5억은 안되고 3억만 내려왔는데 3억에서 소년체전 선수양성이 어려워서 순회코치를 5명만 우선 대표팀을 양성하기 위해서 5명을 증한겁니다. 그래서 65명이 되어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별로 지도교사가 없는 데가 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교육청별로 분배를 하고 우선 소년체전에 고등학교는 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소년체전을 담당하는 선수가 있는데 지정종목 대표팀을 하고 3년간 동안에 전국소년체전에 실적이 없는 종목은 코치를 가급적 줄이고 시·도 대항이기 때문에 메달을 딸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시·군별로 균형을 맞추었는데 어느 정도 안맞

는 데도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충주 남산에 체조코치가 없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이상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충주 남산에 국가대표 코치가, 충주남산에 코치가 남산초등학교와 예성여중을 하나로 해서 코치 하나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정에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을 주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이상일 위원

더 증원할 기회는 없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충주에 준다고 한다면 체조는 코치가 1명이 있기 때문에 예성여중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주어서 지금 국가대표 코치가 있어서 남산초등학교를 같이 봐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충주에 코치가 7명이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3쪽 자산취득비 그것은 이제 설치가 좀 늦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기수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그 자산취득비 260만원은 장애인들에 의해서 장애인특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민원실에 장애자들이 와서 휠체어를 타고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테이블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 밑에 필경대도 장애자들이 글씨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안내용 입간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시설이 설치 될 장소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기수

예, 민원실에 하는 겁니다.

● 이상일 위원

좀 배정을 다해서라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기수

예 기본적인 것은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132쪽에 그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소각로를 계상한 것입니다. 청주시내.

● 이상일 위원

매연 같은 것은 문제 없습니까? 지난번에 그걸 했는데 연기가 나온다고 기자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장들을 괴롭히더라구요. 좀 더 예산이 들어도 좋은 것으로 해 주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조도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 대충 몇 %나 달성이 되는

겁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지금 제도에 조도개선 소요액이 71억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9억1,6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이렇게 되면 대충 목표가 몇 %로 정도 달성이 되는 겁니까, 조도개선 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지금 왜냐하면 조도개선사업이 단순히 등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천장의 문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이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 주신 것을 중심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약집에 보면 11페이지 미국 현지 어학연수 거기 당초 21명에서 7천600만원인데 추가 20명이 더 된거지요, 그렇지요? 교사 어학연수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걸 교사들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은 전체적으로 몇 명정도 되고 앞으로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20명 정원된 속에는 초등교사 10명 중등교사 10명해서 20명입니다. 그들을 선발할 때는 초등의 경우는 희망자를 받아서 그중에 현지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10명을 선정을 하고 중등교사는 희망자 중에서 그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주 연령이 많은 사람은 연수를 받아 봐도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연령을 45세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의 중등의 경우 제일 많은 고령자가 43세가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얼마 안되신 분들은 학과과정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실시한 인원이 '8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등이 327명, 초등이 166명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98년부터 IMF영향으로 인원이 줄어 들어서 '98년에는 26명, '99년에는 2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금년부터는 교육부에서부터 영어수업을 영어시간에는 수업을 영어로 해야한다는 정책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20명이 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럼 이거 치코대학에서 한달동안 하는 거지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4주간입니다.

● **이기수 위원**

이건 앞으로 영어를 초등학교에서부터 강화해 가면서 할 것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전체 중등이 327명이면 영어교사의 몇 %인지는 모르지만 영어교사 본인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관심있게 연구해서 교사의 질을 높여 학생들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어학연수를 영어만 하지 제 2외국어연수 독일어·불어·서반어는 안하고 있지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제 2외국어는 독일어·불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 실적도 있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매년 5명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불어 교사수에 비하면 5명은 적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기수 위원**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고, 갔다 온 분들에 대한 효과에 대한 사후에 관리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88년부터 해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요, 운영성과에 종합 결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17페이지 소년체전 문제

훈련비 예산배정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 한 때 교육감님 회의에서 이 정부에서 지원이 미미했을 경우는 우리 소년체전 안하겠다고 했던 거지요 어떻습니까? 예년에 지원했던 금액과 금년의 지원금액 차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이기수위원님께서 저희 소년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 시·도교육감님이나 평생교육체육과장 회의에서 처음에는 진흥공단에서 사회체육으로 150억내지 200을 풀면서 모든 체육에 기본 뿌리인 소년체육대회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반대를 해가지고 88올림픽 때에 약 한 7천억을 진흥공단에서 적립이 되서 그 이익금만 가지고 타 생활체육이나 일반체육으로 돌리면서 소년체육대회에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정식거래를 해서 각 시·도에 5억씩을 우선 강화훈련비와 장비비를 지원하지 않을 때는 소년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 2년전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5억원을 요구한 것이 금년도 예산에 5억원은 다 주지 못하고 우선 점차적으로 준다고 하면서 금년도 3억이 책정되어서 돌아오는 4월 7일, 8일날 교육감님 뜻을 받들어서 회의를 하는 것을 잡았는데, 일단 국가에서 3억을 주었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 각 시·군에 소년체전출전팀이 확정이 되면 1인당 각 학교에 우선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당장 일선학교에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금년도 대회는 국가에서 3억씩 주었기 때문에, 모자라지만. 아마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과장님 교육감회의에서 주장을 한 것같이 5억 신청한 것이 3억 나온 것은 60% 나온겁니다. 전국 과장님 회의에서 5억이라 했으면 4억이나 아니면 5억을 다 주든지 큰 예산도 아닌데 받아 오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13페이지 봐 주세요.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7억 정도 되지요. 초등·중등·일반직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잘하려고 노력하다보면 어려운 문제도 많이 발생 되겠지만은 이것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임용을 했다면 7억이라는 돈이 안 나가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말이 사실이지요?

● 총무과장 이기수

그것은 아닙니다. 임용전 결격이 생겨서 면직된 사람도 있고요, 또 임용후에 결격사항이 생겨서 면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면직될 때에 퇴직금을 다 주어야 되는데 다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낸 기여금 액수에다 소정의 이자를 더한 금액만 나갔습니다.

● 이기수 위원

본인들이 낸 금액이군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다시 이분들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니까 추가 입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도록 법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계산한 연금에 해당 되는 것만 받을 수 있어요.

● 이기수 위원

그렇게 되면 원래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퇴직했을때하고 이런 보상을 줌으로써 처음에 받았을 것과 더한다면 본래의 퇴직금과 비슷한 액수가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같은 액수가 되고 또 이사람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재임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23페이지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라고 해서 각 교육청별로 예산 배분했었던 것은 어떤 특별기준으로 했으며 청주는 7, 충주 6 이렇게 물량을 해놓은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예산 배분하기전에 종일반운영 가능하다고 하는 유치원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독립원사가 있다든지 해서 시설이 확보된 쪽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 숫자는 학교 숫자지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원 수입니다.

● 이기수 위원

예, 초·중등교원, 일반직공무원 사기양양에 대한 이전비 주는 것은 처음 생긴 것이지요?

● 총무과장 이기수

예,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26페이지 퇴직보상금은 명퇴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까 말씀하신 임용결격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연금을 다 못타가지고 보상해 주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35페이지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운영해 본 결과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절감 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실습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농업기계만 훈련을 1주일씩 해서 거의 일년에 14기만 실시해 왔습니다. 농업기계 자체가 전국적으로 어느 학교든지 평균화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부터는 공동실습소 과목을 다양하게 합니다. 여학생들은 원예분야로 해서 첨단조직관리·수경재배·육묘, 축산과는 대기축·중소가축 가공시설이 청주농고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바꾸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

업기계는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낮추었습니다. 앞으로 농고에서 운영되는 것이 23기 공업쪽은 22기 21기 기계공고, 충북공고 2개학교에서 합니다. 그쪽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21세기의 첨단기계 실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좀 더 학생들의 식대문제 교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가지고 시간수를 줄여 주어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게 문제입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 드리고 이상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데 전기소각로 다이옥신 배출문제 때문에 매년 소각로 문제를 질의를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새로 나와 가지고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성능을 충분히 분석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 제품을 구입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이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진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쓸데는 많은데 비해서 예산은 부족하기때문에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늘리려고 애쓰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재산수입에 영동 범화초등학교

임대료가 1천300여만원 있는데 지금 도내에는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어서 위탁관리비가 상당액수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교학교는 방치하지 말고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세워서 더 허물어지기 전에 유상임대한다든가 매각등으로 임대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금번 1회 추경예산은 교육의 질 향상에 최우선 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대비 교육시설 확보를 고려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본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교육제정의 효율적 운영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예산은 교육수요자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편은 교무실 O/A 시스템 사업을 '99년도에 고등학교 5개교, 금번 추경에 중학교 12개교, 교원 471명에게 1인당 97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투자해서 교과연구를 위한 공간조성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는 교원 사기진작 면에서나 잘하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직원에게 파급될려면 10년이나 걸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농촌현대화 시범학교라고 해서 한 학교에 40억 내지 50억 투자해서 도내 2개교에 초현대화 학교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학교는 좋지요. 그러나 그와 대비되는 다른 학교도 생각해야 되겠고 또 O/A시스템 설치

사업도 그 한 교사에게 100만원 가까운 예산을 해 가지고 사주는 것은 좋지만 그 혜택을 못 받는 학교는 어떻하나요? 그렇게 하고서 농촌현대화 학교도 일년에 한 학교씩 전도에 파급될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의 방침이고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 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교원이 다수의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책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생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선어학실습기기를 99년도 당초예산에는 24개교에 예산을 집행했고 현재는 24개교에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학교에서 외국어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린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생활외국어 교육에 도움이 되는 무선어학기기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이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 없느냐? 2억여원은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각 지역교육청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색사업을 활발히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도록 해야 하는데 연초 기존 예산에 4개 시·군에서만 약 1,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이 서있고 금년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각 지역교육청의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장은 예산편성에 앞서서 교사에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의견도 반영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학교장의 의견이 반영되고 도

에서는 교육장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제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00년도 기존 예산에 학교 화장실 보수개선 예산이 약 57억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도 화장실 보수 개선 예산이 37억원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추경예산의 6%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어떻게 해서 해마다 화장실을 보수해야 하느냐, 화장실에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집중적으로 분석 검토해야 되지 않으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철관을 청주·충주·제천 시지역에만 7억5,000만원 들여서 사 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지역만 필요하고 군지역은 해당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정책성을 띤 질문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고 시간이 1시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김광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진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먼저 폐교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마침 폐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되고 이에 맞게 조례개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폐교재산을 매각하거나 관리하는데 제약받던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일도 대폭 하향 조정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쯤에는 폐교재산관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O/A시스템은 이것이 특별교부사업입니다. 모든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언젠가는 모든 학교에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1인당 97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다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농촌현대화시범학교 관계 송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많이 투쟁해가지고 재량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많이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개축할 학교에 현대화시범학교를 개축할 수 있도록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선어학실관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면은 다른 학교도 모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 무선어학실은 3년전까지만해도 1개학교에 3,000만원씩 지원해서 점차 몇 개교씩 설치를 해주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257개교중 33개교가 무선어학실

이 설치되어 있고 중학교는 115개교 중에서 50교, 고등학교는 77교중 38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7%로 해당이 되고 초등학교로 볼 때는 15%도 안됩니다. 이것도 점차 확대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특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장의 재량권을 많이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교육장의 재량권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교육장님이 원하시는 사업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산에도 있는데 이번에 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직원 화장실입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는 직원 화장실이 없는 학교가 110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화장실이 없는 학교는 학생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직원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우선 중축이 가능한데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칠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왜 시지역에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교육효과를 감안하여 시지역에 많은 학생이 있는데부터 점차 보급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급이 되도록 차후부터는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사업도 그 한 교사에게 100만원 가까운 예산을 해 가지고 사주는 것은 좋지만 그 혜택을 못 받는 학교는 어떻하나요? 그렇게 하고서 농촌현대화 학교도 일년에 한 학교씩 전도에 파급될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의 방침이고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 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교원이 다수의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책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생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선어학실습기기를 99년도 당초예산에는 24개교에 예산을 집행했고 현재는 24개교에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학교에서 외국어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린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생활외국어 교육에 도움이 되는 무선어학기기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이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 없느냐? 2억여원은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각 지역교육청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색사업을 활발히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도록 해야 하는데 연초 기존 예산에 4개 시·군에서만 약 1,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이 서있고 금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각 지역교육청의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장은 예산편성에 앞서서 교사에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의견도 반영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학교장의 의견이 반영되고 도

에서는 교육장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제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00년도 기존 예산에 학교 화장실 보수개선 예산이 약 57억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도 화장실 보수 개선 예산이 37억원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추경예산의 6%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어떻게 해서 해마다 화장실을 보수해야 하느냐, 화장실에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집중적으로 분석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철관을 청주·충주·제천 시지역에만 7억5,000만원 들여서 사 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지역만 필요하고 군지역은 해당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정책성을 띤 질문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고 시간이 1시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김광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진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먼저 폐교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음에 각 지방에 있는 농업계고등학교에서 학생 실험실습이 소홀히 된다고 해서 원성이 높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통합목장 운영에 대해서는 너무 선급한 시책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책 자체를 제고해서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말씀할 자료가 없으면 30일까지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습, 생활이 걸린 문제라 더욱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농업에 대해서 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공동실습이 하계된 발상은 전국에서 충북이 제일 먼저 시범으로 한 것입니다. 저번에 가신 관리국장님이나 부감님이 17억8,000만원을 얻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공동목장을 하계된 동기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장이 15년이 지난 시설이 처음에 할 때는 시설을 만족스럽게 투자하지 못했고 기존시설이 노후되어 재투자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자됩니다. 낙후된 시설을 재투자하느니 이것을 모아서 한군데로 첨단시설을 해서 지난번에 하던 14기에 운영할때는 거의가 농업중심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첨단시설을 해서 아이들을 14기에서 23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실습을 하게 되었고, 두번째는 축산과가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폐과가 되는 실정이고 충북에도 3개 학교만이 축산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에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보은농고 같은데 축산과가 없는데 목장을 해놓으면 물론 과목을 어느 과에서 이수를 합니다 하는데 과가 틀리니까 거기 아이들 실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목장이 어느 학교든지 12k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갈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공동목장을 운영해 가지고 좀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한군데다가 집중 시설을 현대식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한군데로 몰려놓으면 협의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시설속에서 기술을 많이 늘려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지금 타도에서도 저희들 공동목장하는 서류를 많이 보내 달라고 합니다. 청주농고 공동목장 거기에 물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홉번인가 열번을 시추에서 요구하는 그 90톤의 양을 아직 못찾았습니다. 30톤 30톤 나오는데가 두군데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 물을 모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관계는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려도 축사가 대가축, 중·소가축, 양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식 물을 돌리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천 농고에서 청주농고로 와서 1주일씩 와서 실습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시간표를 짜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만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습을 시켜야 하고 두분 세분이 시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학생이기 때문에 생활지도면이라든가, 이론적으로 차이는 안 나겠지만 교사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선급하지 않느냐 그런데 안하면 안할 수록 낡은 시설로 교육을 할려고 하니까 새로운 기계 교구가 모자라고 더욱 낙후된 지방에서는 더 낙후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적절한 시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 손만재 위원

지금 제고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은 각 농업고등학교가 유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시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선 닭이나 돼지나 소를 못 키우게 되어 있어요, 목장이 없어지면서 부터 학생들이 소위 농업고등학교에 축산과 학생들이 고양이를 보고 저거 돼지나 이렇게 문제점도 생길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못기르고 축사 없어졌고 우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축산과 학생들이 통합된 목장에서 충분한 실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무원 이전비 5,6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인원도 56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10만원씩 나누어 줄 것인가? 이걸 거리 관계없이 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산출근거를 질의 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기수

50km까지는 81,000원 100km까지는 11만원씩을 거기다가 이삿짐을 실고 갔을 때 인부임까지 포함해서 주도록 계산했습니다. 대충 1인당 10만원 잡아 놓으면 되지 않을까 어렵잡아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 손만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시설과장님 제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질의를 하는데 금년도 수세식 화장실을 개조하면은 아직도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학교도 아직도 많지요?

● 시설과장 오형균

예, 아직도 있습니다.

● 손만재 위원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그 학교명을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로 빨리 개조해서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재래식 화장실 동수와 수세식 화장실 동수를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어떤 부작용이 나왔는가 하면 교문에 가면 학교장은 운동장 아침 몇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개방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운동장 변두리에 간이식 화장실 있던 것을 다 뜯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 문도 잠고 했는데 일요일날 용변은 어디서 봅니까 운동장 개방을 하지 말던지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앞으로 제가 자료 요구하는데 운동장에 간이화장실 동수는 안넣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자료 30일아침까지 부탁드립니다.

● 시설과장 오형균

예

·참 조 : 서면답변자료 - (별첨3)

(끝에 실음)

● 손만재 위원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6억2,0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는데 초등학교는 전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학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7개교가 아직 학교급식이 되질 않고 있는데 1999년도에 중학교 52개교 고등학교 50개교에 학교급식을 실시 했습니다. 직접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학교명,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명 이것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 드리는가 하면 위탁급식을 시키데 학부형님들이 대단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탁교육

을 앞으로 지양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하고 학교자체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것 하고는 학생 참여도가 다릅니다. 주무담당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 문제가 왜 생기느냐 문제점이 있으면 나열하여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조 : 서면답변자료 - (별첨3)

(끝에 실음)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409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진천교육청과 괴산교육청에 승용차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장을 해 봐도 군수하고 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느 행사에 가도 조그만한 차를 타면 맨 끝에 들어가야 하고 군수차 같은 큰 차를 타야 앞에 들어가고 이거 얼마 차이 아니면 군수와 같은 급의 차를 사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배기량 얼마까지 말라는 지시가 있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적어도 군수와 같은 차를 사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이것은 종전까지는 지역교육장이 탈수 있는 차가 1800cc 미만이었었습니다. 이번에 바뀌어서 2000cc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업무용 승용차로 되어 있었는데

데 바뀌어서 교육장 전용승용차로 되었습니다. 상당히 제고해주셨습니다. 이번 바뀐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가 된 차량은 지금 과산·진천이 제일 먼저 되는것 같은데 여기는 2000cc를 사도록 허가해주었습니다.

● 손만재 위원

그래서 업무용으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쓸수 있게 하는 문제, 배기량이 높게 하는 문제가 교육위원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단협의회에서 미리 건의가 되어서 교육부에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시정 조치 되었으면 청에서도 지역교육장님께 인심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추경예산에 들어 갔습니다.

● 손만재 위원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손만재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 볼까 합니다. 세입분야에 보편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이라고 2,462만3,000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99년도 세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중에서 2,173만7,000원은 '98년도 정산분이고요 288만6,000천원 2000년도 확정분 차액입니다. 저희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세수에 몇 %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산이 끝난 뒤에 추가로 더 준 것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럼 2000년도에도 들어와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288만6,000원은 금년도 분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잘 해 주셔서 저는 별로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만 요번 예산은 580억중에서 대부분이 세출잉여금으로 충당하고 국고보조는 200억이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품구입에 있어서 소각로라든가 다목적칠판, 또는 전산화 사업으로 인해서 컴퓨터, VTR로 여러가지 구입을 하실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교육청에서 단가입찰구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물품구입에 어떻게 할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외 조달청 값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들어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입찰해서 구입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단가입찰제는 계속 우리도가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물품에 한해서 단가입찰을 보이는게 아니라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물품이든지 이 단가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달청 요청과 입찰과의 장·단점은 조달청 단가는 비교적 적정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시행하게 되면 조달청 가격보다도 상당히 다운되는 경향이 있

습니다. 조달청 품목이라고 해서 조달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 실익이 있다고 생각되면 일반 입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일류 메이커 제품은 사실상 많이 비싸고 삼류 제품은 싸고, 특히 전산화 작업에 있어서 구입하는 컴퓨터라든지 VTR이라든가 여러가지 기종은 입찰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 질로 보아서 입찰보다는 조달청에서 조달청 값으로 구입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다음에 봤을 때 좋지 안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우리 본청에 관해서 질문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청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육청에서 오신 과장님께서도 대단히 미안하지만 오전엔 본청만 다루고 지역교육청은 오후에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위원장 김광수

오전에 이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교육청의 질

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오전과 반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손만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손만재 위원

교육위원 손만재입니다.

청주교육청 관리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예산자료 207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육사업 추진이다 해서 이번에 증액분이 7,400여만 원 본예산 합계 1억3,36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 볼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입니다.

목적지원경비로 3,600만원 7,450만원 해서 1억1,0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신축 단독 원사에 교재교구확충비해서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창신학교 단독 원사가 '98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IMF가 와서 내부 교구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세워주는 예산이고, 중설학급 교재교구 확충비 3개원 작년도에 개교한 남평·진흥·경덕·원평 단독원사에 내부시설비 예산입니다. 그밖에 종일반 운영에는 3개원 700만원 이것은 저희 관내에 독립원사가 7학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원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엄마들을 도와주고 이런 예산입니다. 또 실외 놀이기구 1,000만원 3개원 3,000만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3,000만원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신설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있는 3,000만원을 집행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하고 6,000만원인데, 1,500만원씩 4개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신설된 4개원에 실외놀이구역을 각원마다 해주려고 합니다.

또 난방비도 있는데 이것은 75학급에 50만원씩 겨울에 쓸려고 하는 난방비입니다. 그래서 총 1억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손만재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210페이지 정수비 보급이 8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학교입니까?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농촌학교가 4학교 있는데 거기에 직원용 하나, 학생용하나, 지하수를 먹는 학교입니다.

● 손만재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과학정보교육지원금이 기존 예산에서 4,9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각 학교에 정보망 구축비인데 도에서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감액된 예산 5,490만원인데 4,940만원인가를 중등 전산망 구축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손만재 위원

감액이 되어도 지장이 없는 거지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우선 예산을 도교육청의 계획으로 중등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도 계획으로 조정된 것이라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 손만재 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질의말씀은 지금예산서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교육비중 교무실에 O/A 시스템설치비로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교실에 학생들 시설을 먼저 해주어야 되는데 어찌 교무실에 O/A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9,700만원이 계상되었는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릴때에 O/A 특별교부금이 들어가는, 각 시·군별로 배분하는 중학교에 4억5,000만원의 일부분입니다. 청주시로 배정된 학교분입니다.

● 손만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진천교육청에 방송실 기자재 교체비로 청주시교육청에 1개교 1,000만원, 괴산교육청은 1,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유독 진천교육청만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시·군 예산문제는 청주·충주·제천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답변이 되겠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에서 자체 군 사업을 교육장님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

로 타 군하고 비교하는데는 의미는 없습니다.

● 손만재 위원

그것이 몇백만원 차이라면 이해는 하는데 어느 시·군에는 1,500만원인데 유독 진천만 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진천교육청은 강당의 방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손만재 위원

강당에 방송시설을 하는데 6,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다음은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오셨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충주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대단히 잘 되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인데 다른 교육청도 이렇게 학력신장에 대해서 예산 할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계가 많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학교교육이 학원보다 못하기 때문에 학원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학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님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요구가 있을 때는 많이 반영이 되어서 참교육,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손만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하위원입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청주교육청에서는 주요사업비로 역사박물관자료제작구입비로 1억9,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역사박물관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입니다.

역사 박물관은 저희 관내 주성초가 있습니다. 개교가 1907년에 개교되었습니다. 100년을 불과 6~7년 남겨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강당 역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강당이 있습니다. 지나간 100년동안의 사료를 강당에 모아 발전상을 한눈에 되돌아보고 후진들에게 과거를 이해하며 새천년을 계획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역사박물관을 주성초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1억 9,000만원이면 완성이 됩니까?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학교에 교장선생님의 구상에 의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장비나 자료를 확충하는지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차라리 그 자료를 시 박물관으로 주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관람을 할 수 있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교육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해야한다면 모르지만 사회에 역사 보는 박물관과 같이 새

운다면은 가치가 있게 활용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또 이 돈 가지고 된다고 해도 계속 투자가 된다면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겠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충주교육청에서는 전통문화계승 학교를 위해서 김재육교사기념관으로 내부 시설에 1억6,000만원을 새웠는데 김재육교사는 반공관이었잖아요, 옛날에 그것이 전통문화계승관으로 바뀌었나요?

●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지문기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지문기입니다.

전통문화계승학교운영이란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사업명을 정 한것이지요, 같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업명 자체를 전통문화계승학교운영으로 정한 것이지 김재육교사기념관으로 의미를 똑같이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송진하 위원

김재육교사 하면 반공교사로서 반공교육을 중요시 할 때는 반공교육자료로 중요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통문화계승관운영이라고 했습니다. 반공하고 전통문화계승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것인가 싶어서.....

● 예산담당 김용환

사업과목이요 전통문화계승학교라는 과목이 교육부에서 정해준 것이 있는데 그 과목 안에다 김재육교사기념관 정비 및 내부시설을 그 과목으로 넣은 것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산출기초에 보시면 산출기초자체가 김재

육교사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 송진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송진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이기수 위원

이기수위원입니다.

먼저 충주교육청에 질문을 합니다.

답변이 안되면 도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주에 조도 문제를 이상일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상당히 미흡된 것이 많지요, 미흡한 것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시설기획담당 이학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도개선 문제는 미흡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현재 추경에서 편성한 것은 인문계 고교만이라고 우선 해주어야겠다고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조도개선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기준이 300Lux이상입니까, 기준이?

●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300Lux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기준으로 충족 기준이 변동되는 바람에 미달되는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초·중학교는 야간에 오래 안하는데요. 인

문제 고교는 자율학습을 야간에 많이 해서 먼저 충족시키자 해서 야간공부 때문에 인 문제 고등학교를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애들 시력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다른 예산보다도 많이 반영해서 애들 건강하고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예, 알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학생들 위탁급식 문제와 학교급식문제가 앞에서 나왔는데 급식문제 영양가 측정문제로서 오늘은 점심식단이다 하면 몇 칼로리 먹어야 되는데 학생들 급식한다고 해서 집에서 싸오는 점심보다도 영양문제, 건강문제에 소홀하다고 한다면 안되는데 학교마다 식단과 칼로리를 관계를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그 식단은 영양사가 짜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학교는 영양사를 겸직을 시켰습니다. 정확한 칼로리량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몇 칼로리 고학년은 몇 칼로리 고등학생은 몇 칼로리를 섭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식단을 짜야 하는데 아마 집에서 잘 먹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사량만 가져도 충분한 칼로리 섭취를 한다라고 보고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과학적으로 하신다고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대학에서 그랬고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쓰고 해서 한참 문제가 많았지요. 소프트웨어 개발관계, 구입관계에 대한 예산, 복제관계, 자체개발이 완전히 해결되었는지요?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학교에만 작년까지 복제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일선 학교에도 복제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해서 저희 교육청 산하 기관은 복제한 것 없애고 보완해서 정품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선학교에만 작년까지 허용했었는데 일선학교도 올해 예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게 예산에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총소요액을 대략 20억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했고 나머지를 곧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부 정품을 사 쓰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교육기관에서 문제가 안되게 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청주교육청 예산 214페이지 당초예산 토지매입비를 42억 했다가 81억으로 추경에서 증액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추경에서 적게 잡으려고 증액시킨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당초 예산에 개신초·분평초 계약금입니다. 요번에 39억700만원은 명암초 토지구입비 전액입니다. 세교가 관계되는것인데 분평초는 계약금만 4억5,000만원, 개신초는 42억1,100만원 이번에 추경에서 39억700만원은 명암초 토지구입비 전액입니다.

● **이기수 위원**

예산을 81억이어야 하는데 42억만 한 것은 추경을 생각해서 그렇게 세워 놓고 추경에 다시 39억을 세워야만 81억이 되어서 학교 땅을 무난하게 사서 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 개발지역내에 학교부지를 청주지역 수용계획을 보고 토지공사든지 택지개발공사하고 청주시내 수용계획을 보고 초등학교는 몇 필지, 중학교는 몇 필지하고 집어 넣었는데, 용암지역은 세필지 정도가 초등 2필지, 중등 1필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토개공에서 용암 2지구가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오기를 이미 분양을 해서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에 거쳐서 입주가 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내에 대충 신설학교가 다 들어가는데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 완료가 된다고 통보

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직전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럼 뒤에 왔다면 문제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조금 어려웠을 것입니다.

● **이기수 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추경에서 반영한다고 미리 추측이 됐다면 신설하고 안하고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 수용하고 연관되기에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음 지붕방수가 52억씩 되는데, 청주시는 41개 학교가 되어 있어요, 52억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5백20만원 42.5실 입니다.

● **이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1실에 얼마입니까?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여기 계상된 것은 본청에 설치하려고 한 예산입니다. 자체로만 세울 예정이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설치해서 더 완벽한 도난방지와 시설 보안을 하기 위해 시스템을 하는 시설입니다.

● **이기수 위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숙직을 합니까?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종전에는 숙직을 2명씩 했습니다. 이걸 계획해 가지고 1명으로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시내 변두리 학교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숙직도 하고 이중으로 실시하는데 없으세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전 학교에 전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 규모로 봐서는 학교 규모가 방대하고 또 기자재가 많이 있어서 숙직을 하는 학교가 대다수인데 재택하는 학교가 3학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인이 근무하는데도 몇 학교 있고 대다수가 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시스템 설치를 하고도 2인이 숙직을 하나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재택근무하던가 2인이 하던가 교장선생님께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아직은 교장선생님들께서 마음을 못 놓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하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중으로 하는데 앞으로 교장선생님께 재택근무나 근무자를 1인으로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막대한 돈을 들이고

서 시설한거나 안한거나 숙직 똑 같이 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구분해야지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숙직은 종전대로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교육의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시내에 말할 것도 없이 읍지역도 심지어는 시골까지 갖추고 있는데 당직은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숙직은 기능직이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일직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시내 학교도 일직도 하지 말고 재택근무로 하게 해달라고 전교조에서 주장하고 한 사항입니다. 일직은 시내학교는 학교개방 문제 때문에 일직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숙직은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당직을 2인에서 1인으로 재택근무해도 당직비를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시스템을 해놓고 똑같이 숙직을 안하면 경비만 이중으로 지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시스템을 해놓으면은 당직을 2명이 하던 것을 1명이 한다던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당직비는 1일 1만원씩 나가니까. 한달에 30만원 나가겠지요 용역료는 한달에 한 14만원내지 15만원 나갑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지요

● **이기수 위원**

그걸 지적하는 경우도 많은데 무인경비시스템 했다면, 하면 당직을 어떤 방법으로 정정을 해야든지, 문제가 제기되면 안되겠

지요, 또 한가지는 무인경비시스템 해 가지고 거리가 멀어서 도둑질을 해 가지고 간단지 이렇게 되는 일도 우려할 수 있는 경우니까 오히려 하지 않고 숙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247페이지인가 248페이지인데, 충주교육청 지붕방수를 247페이지에서도 1실을 248페이지에서도 지붕방수 1실 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같이 2실로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재원에 따라 나눕니다. 환경개선비하고 일반시설비로 나누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재원이 달라서요.....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이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이상일 위원

단가입찰제를 적용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각교육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학교에 위임하면 교장 자율권은 있지만 문제가 생겨요. 업자들끼리 문제를 일으켜서 진실된 것도 있고 때로는 모함이라든지 해서 불협화음이 있을수도 있는데, 깨끗한 공직풍토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지 단가입찰에 대한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세요. 교장선생님이 자꾸 여기에 말려들어 간다는 말이예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단가입찰에 장·단점은 참 많습니다. 교장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업무의 번잡을 피하고 실질적으로 득이 될 때 이런때 하는 것이지 작은 금액을 단가입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단가입찰을 할 때에는 여러 학교가 같은 물건을 살 때 하는 것이지 학교별로 사는 물건이 각각 다른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앞으로 신학기에 많은 물품을 학교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끝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예방책이 없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행정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회계법규를 준수해서 교장이 그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일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단가입찰로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두번째 화장실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교예정학교 여기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지 학부모들이 대단히 불평이 많고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학생수는 해마다 줄어 들고 이미 폐교하기로 결정이 되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면서 언제 폐교될 것인지 알면서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의 실정을 생각하면 내일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해주어야만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바로 폐교될 때에다 영구시설을 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일 위원

도시학교와 격차가 심해지니까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통·폐합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통·폐합 대상학교가 얼마 없습니다. 타도 충남이라든지 경기도도 같은 지역은 안한 곳이 많습니다. 지난 해에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세종로에 같은데서 시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도는 거의 다 2,3년 이내에 통·폐합이 완료됩니다. 그런 통폐합 대상학교라도 소파수리 이런 것은 할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대수선비이고 이용이 어려운 소파수리는 할 수 있고 그 학교가 통폐합되어서 본교로 가면 거기는 잘 되어 있으니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 이상일 위원

충주교육청 과장님 우리 관내는 몇개의 화장실이 그런데가요?

●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지문기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지문기입니다.

4군데가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럼 언제 해결되나요?

● 충주교육청 관리과장 지문기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 신축해 줄 예정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이 생기면 소규모로 해결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충주수영장 지붕이 누수가 되는데 겨울만 지나면 이렇게 되는데 그 다른 방법 없습니까? 첫 해 쓰고서 해마다 몇백만원씩 교체해야 되니까 낭비가 많이 되지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지금 충주뿐만 아니라 청주, 제천에도 있고 지붕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십억 들기 때문에 그 간접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수십억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수영장 관계는 거기 아닌 다른데도 그런 돈이 들어갑니다. 큰 수리비는 아니더라도 바닥 페인트칠이라든지 타일을 갈아끼운다든지 라이닝을 넣고 하는 것은 어느 수영장 이든지 1년에 한번 수리를 합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충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충원 위원

예, 이충원입니다.

저는 하나 하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까지 오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여러 지역교육청에서 오셨는데 뭐하러 불렀느냐 할 수도 있어 그런 의미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충주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답장있지요, 먼저도 제가 이야기 했지요. 값이 비싼데 m당 36만원씩 80m하는데 100m도 아닌데 3,000만원씩 음성도 하나 있는데 150m인데 5,400만원 들거든요. 교육적 가치가 내부시설보다 더 있는가. 제고할 필요 없습니까? 교육적으로 내부보다는 외부에 치장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겠지요. 그러나 이걸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물함입니다. 이번에 사물함을 보니까 1,000개 정도 새로 만드는데 여기서 2만1,000원씩인데 1,000개면 2천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교체를 해야 되나요?

●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시설기획담당 이학신입니다.

사물함 관계는 현시점에서 교체 완료입니다. 앞으로 망가진다는지 학급중설이 된다는지 하는데에 대한 교체가 있고 지금 현재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 이충원 위원

먼저 예산이 7억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좀 업자간에 잘 살펴주세요, 이것이 세사람이

다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교육감님 의사대로 자율경쟁입찰을 보면 어떻습니까?

● 시설기획담당 이학신

설치되어 있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 이미 있는 것 하고 교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 하고 또 뒤에 있는 것 헐고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자꾸 이야기가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철판이 있죠, 다목적철판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고도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에 120만원인데 이것이 이번에 대충하는 것만 해도 600여개 되는데 600개를 120만원으로 곱했을 때의 액수 총 7억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충북에 전학급이 몇학급인지 모르지만 완료될 때면은 처음것은 못쓰게 됩니다. 한 4~5년 밖에 수명이 못갑니다. 상당히 고가인데 도시에서부터 해나간다고 했는데, 무엇이 더 급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질 않겠나요, 이렇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닙니다. 일부 구입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끝났고요.

● 이충원 위원

조금전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 농촌시범학교에 한군에 하나씩

세운다 이렇게 되면 그와 같은 건물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200년 걸려야 됩니다. 이 건 뜯고 한군데다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시설도 제가 보기에 고가의 철판하나에 120만원인가 130만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경비입니다.

이것은 시달이 어느 정도 되었을텐데 시단위에 교당 주는 액수가 다르데요. 어떤 학교는 30만원, 어떤 학교는 20만원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연수교재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어떤 군은 한 권에 200하는데 1만2,000원 어떤데는 1,200원 이렇게 되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봐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교재는 법이 바뀌고 조금 있으면 조례개정한 것을 심사를 해주시겠지만은 법이 바뀌면서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수를 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위원 연수교재를 만들어 줍니다. 그것을 사다가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각 시·도마다 주문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전체를 같이 하면 적게들지 않느냐 해서 같이 구입한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데는 1만2,000원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2,000원 한 곳이 있어

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수는 없고 1,200원 하는데는 간단하게 리플렛으로 1~2장으로 되어 있고 1만2,000원 하는데는 책자로 된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말씀을 해주셨고 끝으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예산의 균형 배정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교와 학급수, 신설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행정담당 하시는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흔히 이야기하기를 힘있는 자가 혜택을 많이 받지 않는가. 예산을 요구해서 안된데는 안된대로 된데는 된대로의 자꾸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셔서 균형 배분하는 데에 힘을 써 주십시오. 잘못하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이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진하위원님께서 청주교육청 역사박물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성초등학교에서 하는가 보죠, 1억9,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지요?

213쪽 내부자료제작 9,000만원, 215쪽에 보면 역사박물관시설 1억이구요. 그러면 학교에 시설할 만한 교실은 여유가 있습니까?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주성초등학교에 일정때 지은 강당이 있습니다. 교실 4칸의 강당이 있습니다. 지금 신형의 강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강당을 외부 수리해서 내부에다 역사교육 충북교육의 실상을 나타낼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시설을 한다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관리과장 나성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 다음에 청주시내 학교의 수도물 사정인데요, 정수기 내지 지하수 보수를 한다고 하는 예산이 몇군데 있는데 수도물을 정수하는 겁니까?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지금 청주시내에 지하수가 있는 학교가 4 학교가 있습니다. 봉정초·내곡초·서촌초·운동초가 있는데 상수도가 가지 않고 지하수를 먹을 망정 음용에 적합하다고 판정 받은 지하수입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 어머니회장들께서 정수기를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개운하게 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2대씩 8대 사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수도물 사용하는데는 지금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나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물이, 지하수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수도물 사용하는 청주시내 학교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겁니다.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수도물 사용하며 정수기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하수 시설비가 300만원씩 그것은 확장실과 다른 허드렛 물을 쓰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4~5년씩 되면 지하 모터라든지 모래가 쌓이고 물도 수맥이 줄고 남아 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그 다음에 명암초등학교에 39억 부지매입비는 평당 얼마나 주고 산 것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평당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초등학교 부지매입비는 조성비의 70%만 주고 매입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217쪽 다음은 청주시의 학교하고 청원군의 초등학교인데, 2,500만원이 들어있고 청원군에는 1억1,39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진입로 포장 공사를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청주시에 포장비가 1억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우암초와 중앙초 진입로 포장과 내부진입로 포장으로 학생들의 통행이나 놀이에 지장이 없고 그것을 안할 경우 교실로 그 흙이 그대로 묻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교육환경에 지장이 있습니다. 학교장님과 학부형님들의 건의로 매년 올라오는 사업이라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예, 알았습니다.

청원교육청 말씀해 주십시오?

●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이흥무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이흥무입니다.

강내와 가덕학교인데요. 강내에 진입로 포장관계를 자체재원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과정입니다. 자체재원이 교육장님 재량사업비가 5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70%를 지금 시설비로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포장관계는 그전에 예산에는 별로 안들었는데 이번에는 각 시·군 마다 상당히 들어 있어요?

●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이흥무

운동장 교문에서 학교 건물까지의 포장관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성찬

그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중앙초등학교하고 우암초가 있는데 높고 저지대 학교가 돼 있어서 공사를 하던지 하면 운동장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 아주 학생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가 오면 말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일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더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다음에 한가지 더는, 한마음축제를 하는게 있어요 이것이 각 시·군지역에 500만원씩 균일하게 배정이 되었어요 큰 지역이나 작은 지역이나 똑 같이 배정되었나요, 청원군은 왜 배정하지 않았나요?

●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이흥무

저희들은 종합예술제라는 당초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은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각 시·군 단위로 축제를 하는 것입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한마음축제는 금년 들어서 새로 시작한 특별사업입니다. 도단위 차원에서 충청북도·검찰청·도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축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5월 22일 소년체전할 때 하게 되는데, 그 사전단계로서 각 시·군에서 협의해서 사람이 인솔해서 청주시에 참여하는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예산지원하고 검찰청에서 지원하고 저희들도 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예산편성이 대개 500만원씩을 배정한다구요?

● 교육국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제111회-제2차 예·결산소위원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 많으셨습니다.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11시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
답변을 종결합니다. 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
분! 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 고생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광수, 간사 이기수,
위원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정호선,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청주교육청관리과장 나성찬,
청원교육청관리과장 이흥무, 충주교육청관리과장 지문기,
제천교육청관리과장 표순성,

※ 부 록

-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 (별첨2)
- ▶ 서면답변자료 : (별첨3)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3월 29일 (수요일) 11시 12분

議事日程 (제11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개회)

●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차 소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광수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 위원장 김광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조정하기로 한 부분은, 도내 공고 및 상고 18개교의 인터넷 접속능력 향상을 위한 캐쉬서버 확충사업비 9,900만원중 상고를 제외한 공고 11개교분 6천50만원, 그리고 고등학교 14개

(제111회-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교의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비 3억6,400만원
총 4억2,45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
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정내용과 같이 본 추경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사업비
를 예비비에 편입하여 세입·세출 예산 각

각 8,115억4,114만 6,000원으로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며, 추경예산안 편성에 애쓰신 집행청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
침과 아울러 제3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
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광수, 간사 이기수,
위원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4. .

위원장

김광수



간사

이기수



위원

손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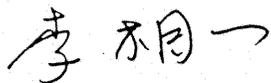
위원

송진하



위원

이상일



위원

이충원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3. 27 (월) 11:40~	<p style="text-align: center;">[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00. 3. 28 (화) 10:00~	<p style="text-align: center;">[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0. 3. 29 (수) 11:00~	<p style="text-align: center;">[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폐회 	

(별첨2)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자료

충청북도교육청

I. 기본방향

-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제7차 교육과정대비 교육시설 확보
- 교육환경 개선 및 수용시설 확보
- 교원 사기진작 방안 모색

II. 재원별 개요

(단위 : 천원)

재원별	사업명	예산액	비고
보통교부금	경상재정교부금조정	557,030	
양여금	양여금 조정	1,956,314	
특별교부금	전국소년체육대회참가훈련비	300,000	
보조금	귀국학생 담당교사 연수의 4건	78,250	
도세전입금	도세전입금('98 정산분 포함)	24,623	
자체재원	폐교재산 임대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인상분) 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수수료	13,600 3,769,683 425	
순세계잉여금	'99.순세계잉여금	52,097,858	
합계		58,797,783	

III. 예산액 규모

1. 예산총액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811,541,146	752,743,363	58,797,783	기정예산대비 7.8%증

2. 세 입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 감		비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합 계	811,541,146	100.0	752,743,363	100.0	58,797,783	7.8	
국가부담수입	658,249,477	81.1	655,357,883	87.1	2,891,594	0.4	
-지방재정교부금	458,487,030	56.5	457,630,000	60.8	857,030	0.0	
-지방교육양여금	165,015,314	20.3	163,059,000	21.7	1,956,314	1.2	
-교육환경개선비	30,808,000	3.8	30,808,000	4.1	0	0.0	
-국고지원금	3,939,133	0.5	3,860,883	0.5	78,250	2.0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	4,294,003	0.5	4,269,380	0.6	24,623	0.6	
-법정전입금	3,924,623	0.5	3,900,000	0.5	24,623	0.6	
-비법정전입금	369,380	0.0	369,380	0.1	0	0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 계부담수입	148,997,664	18.4	93,116,098	12.3	55,881,566	60.0	
-재산수입	621,397	0.1	607,797	0.1	13,600	2.2	
-입학금및수업료	42,341,265	5.2	38,571,582	5.1	3,769,683	9.7	
-사용료및수수료	406,561	0.1	406,136	0.1	425	0.1	
-잡수입	4,119,583	0.5	4,119,583	0.5	0	0.0	
-이월금	64,406,858	7.9	12,309,000	1.6	52,097,858	423.3	
-지방교육채	37,102,000	4.6	37,102,000	4.9	0	0.0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2	0	2	0	0	0	

3. 세 출

(단위 : 천원, %)

관 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율	
합 계	811,541,146	752,743,363	58,797,783	7.8	
유 치 원	3,924,922	2,958,382	966,540	32.7	
초 등 학 교	127,291,298	107,365,954	19,925,344	18.6	
중 학 교	76,939,661	63,297,660	13,642,001	21.6	
고 등 학 교	71,209,732	54,534,734	16,674,998	30.6	
특 수 학 교	8,360,412	8,161,140	199,272	2.4	
기 타 학 교	1,200	1,200	0	0.0	
평 생 교 육	1,182,621	963,391	219,230	22.8	
금 여 관 리	420,874,311	420,874,311	0	0.0	
복 지 · 후 생	56,909,118	52,968,795	3,940,323	7.4	
교 육 위 원 회	349,540	307,912	41,628	13.5	
교 육 청	6,129,628	5,363,976	765,652	14.3	
지 역 교 육 청	4,489,510	3,388,040	1,101,470	32.5	
교 육 지 원 기 관	3,348,532	2,031,238	1,317,294	64.9	
지 방 채 상 환	6,521,850	6,521,850	0	0.0	
제 지 출 금	2,241	0	2,241	-	
예 비 비	24,006,570	24,004,780	1,790	0.0	

IV. 세출예산 주요투자사업 내역

1. 21세기 선진 교육환경 개선 : 32,590백만원

□ 제7차 교육과정 교육시설 확보 7,170백만원

○ 특별교실 및 교실 증축 : 73.5실 7,170백만원

□ 교육환경개선 시설 16,230백만원

○ 교실증·개축 : 31실 1,674백만원

○ 교원편의실 확충 : 1실 54백만원

○ 대수선 : 1,391실 7,356백만원

○ 교실난방개선 : 315실 1,416백만원

○ 화장실 개선 : 5.5실 419백만원

○ 급수시설 개선 : 39개소 721백만원

○ 승압시설 : 9교 681백만원

○ 외부환경 개선 : 100개소 3,213백만원

○ 기타 시설 : 696백만원

□ 교직원 화장실 2,146백만원

○ 교직원 화장실 확충 및 보수 : 42실 2,146백만원

□ 수용 및 일반시설 확충

7,044백만원

- 교실증축 : 10.5실 564백만원
- 초·중통합학교 시설(덕산초) : 1,245백만원
- 단독유치원사 신축(운천초) : 1동 400백만원
- 부족 교실증축(신백초) : 6.5실 407백만원
- 다목적교실 신축(연풍초) : 680백만원(특별교부금)
- 화장실 개선 : 4실 297백만원
- 급식시설 개선 : 7개소 831백만원
- 체육장 시설 : 8개소 445백만원
-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 998백만원
- 기타시설 1,177백만원

2. 학교신설 : 12,410백만원

□ 신설학교 부지매입

12,181백만원

- 가칭 「명암초」 : 12,509㎡ 3,907백만원
- 가칭 「복대교」 : 15,690㎡ 8,274백만원

□ 신설학교 설계용역비(가칭 명암초)

229백만원

3. 교육정보화 사업 : 1,080백만원

□ 학교전산망 구축

497백만원

- 공립 초·중·특수(31교) 360백만원 (국고보조금 99백만원)
- 사립특수·고(6교) 137백만원

멀티미디어교육실 확충(청주,충주,제천,청원과학관) 270백만원
○ 성능이 낙후된 컴퓨터 교체 및 확충

캐쉬서버 확충(18교) 99백만원
○ 인터넷 접속속도 향상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교육과학연구원) 200백만원

○ 교육용 S/W개발·보급	165백만원
○ 우수 S/W복제·보급	17백만원
○ VTR영상자료 개발·보급	4백만원
○ 컴퓨터 연수	14백만원

교육정보활용능력 평가 14백만원
○ 컴퓨터 및 각종 교수-학습기기 조작능력 신장

4. 교단선진화 사업 추진 : 969백만원

교단선진화 969백만원

○ 중학교 다목적칠판 구입(622개)	753백만원
○ 초등학교 무선어학실 설치(24교)	216백만원

5. 교원연수 : 283백만원

유치원 교원연수(2과정 12명) 6백만원
○ 유아교육 행정 전문과정 2명, 유아교육 전문과정 10명

- 초등 교원연수(9과정 109명-전문직포함) 54백만원
 - 전문직 양성과정의 8개과정
- 중등 교원연수(10과정 79명) 188백만원
 - 부전공 자격연수의 9개과정
- 미국현지 어학연수(20명) 70백만원
 - 당초 21명 76백만원(추가 20명)
- 교원 컴퓨터 연수(1,040명) 181백만원
-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연수(1,200명) 59백만원
- 실업계 특수교과 교원연수(67명) 29백만원
- 교사 실험연수(1과정 560명) 103백만원
 - 중등 과학교사 80명, 초등 자연과 480명
- 연수여비 조정 Δ 407백만원
 - 초등교원(4과정 감327명) Δ 175백만원
 - 중등교원(3과정 감187명) Δ 232백만원

6. 실업교육 강화 : 213백만원

- 직업교육 확충 213백만원
 - 충북직업교육 종합축제 10백만원
 - 졸업생을 활용한 직업교육(강사료) 3백만원
 - 실고 CAD실 설치(청주농고) 200백만원

7. 학교급식운영 및 시설비 지원 : 620백만원

조리보조원 인건비(초등 4명) 25백만원

급식 기구구입비 595백만원

○ 급식기구 구입(공립중8교, 사립중1교) 595백만원

- 청주남중, 봉명중, 청주중앙중, 남성중, 충주중앙중, 제천중, 옥천여중,
덕산중, 한일중

8. 학교체육 진흥 : 300백만원(특별교부금)

순회코치 증원(5명) 48백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162백만원

○ 선수 훈련비(525명) 147백만원

- 당초 150명(42백만원)→675명(189백만원)증원

○ 출전 및 입상선수 격려 등 15백만원

학교체육활동 지원 90백만원

○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입상교 지원 30백만원

○ 지정종목 훈련장비 구입 60백만원

9. 교직원 사기 진작 : 513백만원

공무원 이전비 56백만원

○ 초등 : 220명, 중등 : 280명, 일반직 : 60명

- 교무실환경개선(중학교 12교) 457백만원
 - 교무실 OA시스템 설치(특별교부금400백만원)

10. 복지·후생 : 3,941백만원

- 퇴직수당 부담금('99. 부족분) 1,313백만원
- 의료보험부담금('99.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족분) 1,909백만원
-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719백만원
 - 초 등 (2명) 326백만원
 - 중 등(2명) 149백만원
 - 일반직(11명) 244백만원

11 지원기관 시설확충 : 241백만원

- 연수시설 개선(단체교육연구원) 142백만원
 - 시청각 기교재 시설 142백만원
- 도서정보 서비스체제 구축(중앙도서관) 99백만원

(별첨3)

서면답변자료

충청북도교육청

수세식화장실 미보유교 현황

시군별	급별	학교명	재래식 화장실수	수세식미보유사유	비고
충주	초	강천초	1	소규모학교	
		능암초	1	"	
		가흥초	2	"	
		목계초	1	"	
		수상분교	1	"	
		매현분교	2	"	
	중	가금분교	2	"	
	소계		10		
청원	초	도원분교	2	소규모학교	
		금관초	2	"	
		갈산분교	1	"	
		구성분교	1	"	
	소계		6		
보은	초	아곡분교	1	소규모학교	
옥천	초	대정분교	1	소규모학교/수원부족	
영동	초	노송초	2	소규모학교	
	중	정수중	2	"	
	소계		4		
괴산	초	외사초	2	소규모학교	
		신월분교	1	"	
		백마분교	1	"	
	소계		4		
합 계		26			

중학교 급식실시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청	전체학교수	급식학교수	운영형태		비고
			직영	위탁	
청주	24	5		5	
충주	15	9	8	1	
제천	11	6	6		
청원	9	4	3	1	
보은	7	7	7		
옥천	5	3	3		
영동	9	5	4	1	
진천	6	3	3		
괴산	13	9	8	1	
음성	9	5	5		
단양	7	5	5		
계	115	61	52	9	

중학교 급식실시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청	학교명	전체 학생수	급식 학생수	운영형태		비고
				직영	위탁	
청주	청주중	1,241	1,037		○	
	서원중	1,376	1,103		○	
	세광중	1,013	720		○	
	일신여중	1,034	521		○	
	대성여중	1,025	515		○	4월3일 급식예정
충주	충일중	1,050	1,050	○		
	수안보중	137	137	○		
	신니중	179	179	○		
	노은중	76	76	○		
	산척중	99	99	○		
	양성중	202	202	○		
	주덕중	285	285	○		
	북여중	962	870	○		4월10일 급식예정
신명중	219	137		○	4월 6일 급식예정	
제천	제천동중	1,096	1,035	○		
	봉양중	160	160	○		
	수산중	71	71	○		
	한송중	23	23	○		
	백운중	175	175	○		
	송학중	221	221	○		
청원	문의중	173	157	○		
	오창중	437	350		○	
	가덕중	153	143	○		
	현도중	93	95	○		
보은	보은중	531	478	○		4월 3일 급식예정
	보덕중	211	205	○		
	원남중	151	151	○		
	회인중	86	86	○		
	속리중	88	80	○		
	내북중	67	67	○		
	보은여중	493	382	○		4월 3일 급식예정
옥천	청산중	209	209	○		
	안내중	146	146	○		
	이원중	196	196	○		

중학교 급식실시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청	학교명	전체 학생수	급식 학생수	운영형태		비고
				직영	위탁	
영동	용문중	161	161	○		
	황간중	350	309	○		
	상촌중	87	87	○		
	학산중	110	110		○	
	심천중	116	116	○		
진천	진천중	645	645	○		
	이월중	210	210	○		
	백곡중	73	73	○		
괴산	괴북중	275	275	○		
	청천중	157	157	○		
	송면중	72	72	○		
	칠성중	135	135	○		
	장연중	51	51	○		
	연풍중	124	124	○		
	목도중	132	132	○		
	감물중	96	96	○		
	중평여중	488	153		○	
음성	음성중	281	271	○		
	대소중	359	246	○		
	삼성중	275	266	○		
	감곡중	206	185	○		
	매곡여중	238	180	○		
단양	단성중	202	202	○		
	가곡중	77	74	○		
	영춘중	114	93	○		
	별방중	52	30	○		
	단산중	75	38	○		
계	61교	18,839	15,852	52	9	

